

**2025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  
용자사업  
신청안내서**



# 목 차

I. 사업 지원 계획 .....	1
① 2025년도 용자지원 개요 .....	3
② 용자 심사 계획 .....	11
③ 용자 배정 계획 .....	14
④ 용자 사후관리 계획 .....	18
II. 사업 제도 개선 사항 .....	21
① 전년 대비 제도 개선 사항 .....	23
III. 사업 신청방법(KASFO 용자시스템) .....	27
① 사업 신청 절차 .....	29
② 용자신청서 작성 방법 .....	30
• KASFO 용자시스템 접속, 로그인, 용자신청 .....	30
• KASFO 용자시스템 용자신청서 작성 .....	31
• KASFO 용자시스템 사업계획서 작성 .....	32
• KASFO 용자시스템 용자신청서 제출 .....	34
• (서식1) 사학진흥기금 용자신청서 .....	35
③ 용자신청서 첨부자료별 작성 방법 .....	39
• (서식2) 사업계획서 .....	39
• (서식3) 부채현황 .....	70
• (서식4) 연도별 차입금 상환계획서 .....	71
• (서식5)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	72
• (서식6) 회계별 미지급(비용)금 변동 현황 .....	74
• (서식7) 학교법인 임원 변동현황 .....	75
IV. FAQ .....	77
【 별첨 】 2025년도 용자사업 심사표 .....	83



# 사업 지원 계획





# 사업 지원 계획

## 1 2025년 용자지원 개요

### 1 예산 규모 및 배정 방법

#### ○ 예산 규모

- 2025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사업 예산 총 218,063백만원 중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에 172,840백만원, 그 외 일반용자에 45,223백만원 배정

※ 예산 규모는 '25년 예산 정부안 기준으로 연말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 배정 방법

- (정기배정) 용자 신청, 심사 및 배정 기준에 따라 교육여건 및 재정여건 개선 사업별 아래 배분 비율에 따라 예산 배정

사업 구분	일반 용자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교육여건 개선 사업	60%	70%
재정여건 개선 사업	40%	30%

※ 사업별 배분 비율은 용자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예비배정) 정기배정 시 용자사업 예산의 50% 수준 범위 내 예비 순위를 설정하고, 정기배정교의 포기(취소)가 발생하면 예비 순위에 따라 배정

※ 단, 50% 범위에 사업 신청금액 일부만 포함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청금액 전액을 예비배정

- (추가배정) 정기배정교 및 예비배정교 배정 이후 포기(취소)가 발생하는 등 용자 예산이 남는 경우 추가신청을 받아 배정

※ 정기배정 이후 배정포기(취소) 등으로 연중에 추가배정을 실시할 경우 사업 수요에 따라 정기 배정의 사업별 배분 비율과 상이할 수 있음

## 2 지원 대상

- 「사립학교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부속병원 포함)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3 지원 사업

- 교육여건 개선사업

사업구분	종류 (예시)
① 미래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충사업</li> <li>● 스마트(AI, AR/VR)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스템(STEM) 교육 등</li> <li>● 시설 환경 조성 및 기자재 구입</li> </ul> </li> <li>□ <b>ESG 중 환경(Environment) 관련 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구축</li> <li>●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위한 설비 개선(LED 조명기구 교체, 에너지절약 설비 설치, 단열재 교체 등)</li> <li>●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 지력(풍력) 발전 설비 구축</li> <li>●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 설비 구축</li> <li>●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설비 구축 등</li> </ul> </li> <li>□ <b>산학협력 관련 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확충 사업</li> </ul> </li> <li>□ <b>평생교육 관련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확충 사업</li> </ul> </li> </ul>
② 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재해 피해 복구 및 방재·방역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 화재 피해 시설물 복구 지원 및 방재지원</li> <li>● 내진 보강 및 소방 안전, 화재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확충 등 안전성 강화 사업</li> <li>●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시설 구축 및 개선, 기자재 구입 등 환경개선</li> </ul> </li> <li>□ <b>노후 시설 개선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에 해당하는 노후시설의 개보수, 리모델링, 구조보강, 안전관리, 철거 및 개(신)축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시설물</li> <li>(2)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물</li> <li>(3) 교육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물 개·보수 사업</li> <li>(4)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의 이전 사업 및 노후 시설의 개축</li> </ol> </li> </ul> </li> </ul>



사업구분	종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기자재 및 학교안전 인프라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련 노후 기자재 및 안전시설 확충(소화기 등)</li> <li>● 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li> <li>● 학교 보안체계 강화(CCTV, 출입통제장치 등)</li> <li>● 유해물질(석면, 라돈가스, 미세먼지 등) 방지 및 제거</li> </ul> </li> <li>□ 장애인(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교육시설 신·증축, 리모델링</li> <li>● 장애인용 교육 기자재 구입</li> <li>●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③</p> <p>교육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프로그램 개선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시스템 개편 및 체계화 지원</li> <li>- 교수학습지원 체계 고도화</li> </ul> </li> <li>● (교육용)교재·교구·설비의 교체 및 확충</li> <li>● 교사(校舍)시설의 리모델링, 대수선, 개·보수</li> <li>● 실습 또는 연구시설 확충(IT 기반 학습환경 구축)</li> <li>● 경영정보시스템 등 IT인프라 구축비</li> <li>● 원격교육을 위한 인프라 조성(원격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반 조성, 기자재 구입, 연구 개발비, 대용량 서버 증설 등)</li> </ul> </li> <li>□ 교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校舍)시설의 매입 및 건축</li> <li>● 교지 매입 및 학교 이전 사업</li> <li>● 구외 교사시설 임차보증금 지원</li> <li>● 국내 대학의 국외 교육시설 확충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환회계 및 재원이 학교법인회계 또는 국외분교·캠퍼스 교비회계인 경우에 한함</li> </ul> </li> </ul> </li> <li>□ 기숙사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기숙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신·증축, 리모델링 사업</li> <li>● 기숙사 기자재, 물품 구입</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④</p> <p>교육특화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병원 관련 사업 (부속병원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의료 기자재 확충)</li> <li>□ 학교기업 관련 사업 (학교기업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기자재 확충)</li> </ul>

○ 재정여건 개선사업

사업구분	종류 (예시)
<p>①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p>	<p>□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따른 유·무형 고정자산 취득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li> <li>● 시스템 통합을 위한 IT인프라 구축 등</li> </ul> <p>※ 사립대학이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구체적 계획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한 가시적인 구조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한하여 용자 지원</p>
<p>②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사업</p>	<p>□ ESG 중 환경(Environment) 관련 사업</p> <p>□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매입, 개·보수 및 신·증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매입의 경우 건물 신축 또는 건물 매입에 한하여 지원</li> </ul>
<p>③ 운영비 지원사업</p>	<p>□ 운영비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및 학교, 부속병원 운영비 지원사업</li> </ul> <p>* 중등이하 법인은 제외</p>
<p>④ 대환대출사업</p>	<p>□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운영비 포함)을 위한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 대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병원 기자재 리스까지 지원하며, 조기상환 시 수수료까지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li> <li>※ 국내 대학의 국외 교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은 대환대출 제외</li> </ul>

## 4 용자 신청 및 지원 한도

- (용자 신청) 사업비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금액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제한) 용자 배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지원 한도) 일반 용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며 정원 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는 한시적(~'30년 예정)으로 한도 제한 없이\* 지원  
\* 용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하되 예산 부족 시 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MIN(①, ②)

#### ① 누적지원금 : 기본재산 규모별 상한액\* - 용자신청 마감일 용자금 잔액\*\*

\* 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병원재산 장부가액+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의 규모별 차등

규모별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법인기준 상한액	900억원	800억원	700억원	600억원

\*\* 법인+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용자금 잔액

#### ② 당해연도 용자지원 한도액 : 250억원\*

\* 당해연도 법인+교비+부속병원회계 용자배정 합산 금액

※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는 한시적(~'30년 예정)으로 한도 제한 없이 지원하며, 누적지원금 및 당해연도 용자지원 한도액 산출 시 해당 용자금은 제외

※ 관할청에서 위치변경 등 승인을 득한 학교이전사업의 경우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달 가능성,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상한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5 용자 조건

- (이자율) 일반 용자와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차등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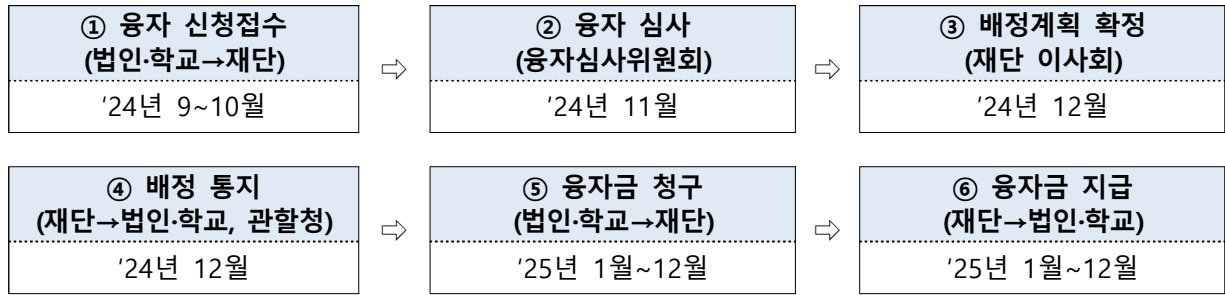
일반 용자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용자이자율 산출방식*에 따라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24.3분기 기준 연 2.77%)	고정금리 연 1.5% ( '25년에 한하며 '26년 이후 변동 가능)

\* 이자율 산출 시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관련 금액(공자기금 차입금, 용자 지원금)은 모두 제외함

- (연체이자율) 해당 분기 용자이자율 + 3%p
- (사용시기) 용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 ~ 사업완료 시까지
-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운영비 지원사업은 5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자율 선택(단, 거치기간은 5년 이내)

## 6 응자 지원 방법

### ○ (응자금 지원절차)



응자금 포기(취소) 재원 발생 시, 위 지원절차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실시(별도공문 안내)

### ○ (응자금 청구 및 지급방법) 계약체결사업에 한해 청구 순서대로 지급

※ '25년에 한해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의 시설 확충 용자는 설계 용역 계약 체결 및 건축 허가 완료 시 청구 가능

## 7 기타 주의사항

### ○ 교외 학생기숙시설 등 구외교육시설 임차보증금 지원

- 임대차 계약서, 재학생의 기숙사 입주 지원 결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급의 적정성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등 권리확보 수단 마련 여부를 확인 후 지급 가능

※ 필요 시 응자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목적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등 권리확보 수단 마련 여부 확인 후 응자 지급

※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연 2회(1,2학기)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 학교이전(위치변경) 사업 관련

- 학교이전(위치변경)의 경우 선취담보 조건으로 응자 지원

※ 단, 선취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응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응자 조건을 정함

- 중등학교법인 및 중등이하 학교의 이전(위치변경)사업의 경우, 응자금 지급 방법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예시 : 계약 상대방에게 대금 직접 지급 등

### ○ (부정·비리 자가신고) 응자 신청 시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경우 추후 적발 시 즉시 배정취소

- **(결산상 미지급금)** 법인회계, 학교회계, 부속병원회계(2023회계연도 기준) 결산서 대차대조표 미지급금 명세서상 미지급(비용)금에 대한 변동 현황을 작성하여 용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배정효력 상실제)** 용자 사업비 예산소진 시 미청구 자금은 배정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며, 2025년도 6월 말까지 계약 미체결 등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관련 인허가 미승인 등으로 연내 자금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배정효력이 상실됨
- **(용자금 지급제한)** 관할청으로부터 사학기관으로 통지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해 사학기관 비리 등 문제 발생 시 용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비리 발생교 용자 제한 대상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에 개입되었거나,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감사·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학기관이 신청한 사업. (단, 형사처벌은 금고 이상, 감사처분은 중징계 이상,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중등이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적용기간은 용자심사위원회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로 한다.)

- **(사업명 구체화)** 용자 신청사업의 사업명 기재 시 추진하려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명을 작성

**<사업명 작성 예시>**

- 1) 단일 계약으로 여러 건물을 동시에 리모델링 및 안전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인 경우  
→ 노후 건물 보수공사 및 교육 인프라 안전 개선
- 2) 교내 강의동 천정의 유해물질(석면) 제거를 위한 교체 공사의 경우  
→ 교내 강의동 유해물질 함유 천정 교체 공사

- **(운영비 지원 주의사항)**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출(예정)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운영비 지출계획 대비 집행내역을 서면/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면 용자금 회수 조치

○ 접수 방법

- 「KASFO 용자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시스템 입력 완료 후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총장, 병원장)의 날인이 들어간 제출서류(사업신청서 등)의 스캔본을 재단으로 전자공문 제출 필요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재정지원부)

○ 문의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재정지원부 (☎ 053-770-2522~5)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재정지원부(우편번호 41069)

## 2 용자 심사 계획

### 1 기본 원칙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심사

### 2 용자 심사 기준

- (상환능력평가) 상환회계별 7~9개 항목 총 100점 만점

구분	대학(교비회계)	대학(법인회계)	대학(부속병원회계)	중등이하(초·중·고)	중등이하(유치원)
심사지표 (상환능력평가)	1. 학생 등록률 추세(20점) 2. 등록금의존율(10점) 3. 차입금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20점) 4. 기본재산 규모(10점) 5. 적립금 규모(10점) 6. 차입금 의존율(10점) 7. 운영이익(20점)	1. 수입대비 지출비율(10점) 2. 차입금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20점) 3. 운영차액 규모(10점) 4. 기본재산 규모(20점) 5. 적립금 규모(10점) 6. 차입금 의존율(10점) 7. 운영이익(20점)	1. 영업이익률(10점) 2. 유동비율(10점) 3. 차입금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20점) 4. 이자배상 비율(10점) 5. 기본재산 규모(10점) 6. 적립금 규모(10점) 7. 차입금 의존율(10점) 8. 운영이익(20점)	1. 재산 및 사업수입 비율(10점) 2. 차입금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20점) 3. 재산 및 사업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10점) 4. 기본재산 대비 차입금 비율(10점) 5.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10점) 6. 운영차액규모(10점) 7. 세입규모(10점) 8. 이월금 규모(10점) 9. 차입금 의존율(10점)	1. 정원내 재원율(10점) 2. 재산 및 사업수입비율(15점) 3. 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20점) 4.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15점) 5. 세입규모(15점) 6. 이월금 규모(15점) 7. 차입금 의존율(10점)

※ 소수점 처리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심사 가·감점)

가산점 항목	감점 항목
①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교의 사업 : 5점 ②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대학 및 전문대학 : 5점(2023회계연도 기준) ③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 : 5점	① 최근 3년간 30일 이상 연체실적 학교(법인) : 5점 ②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 1차 처분 : 10점/ 2차 처분 : 15점 ※ 다만, 용자사업규정 제16조(용자 배제 및 제한 등) 제1항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및 동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 법인의 정상화에 해당되어 용자배제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법인의 경우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용자배제 및 제한사항)

배제사항	제한사항
<p>① 용자사업규정에서 정한 다음의 용자 배제 사항 중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용자를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p> <p>가. 교육환경개선과 무관한 사업</p> <p>나. 당해 연도에 학생 모집을 못하는 신설학교의 사업</p> <p>다. 학교이전사업 중 이전승인을 얻지 못한 사업</p> <p>라. 용자 신청일 현재 기존 용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연체중인 학교</p> <p>마. 심사일로부터 2년 이내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에 개입되었거나,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감사·행정처분이 확정된 사학기관(형사처벌은 금고 이상, 감사처분은 중징계이상,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다만,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라 관할청이 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는 위의 "마"호에 따른 용자 배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p> <p>② 최근 3년 정원내 신입생충원율 또는 정원내 재학생충원율을 평균 70%미만인 학교</p> <p>③ 용자신청 마감일 현재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이 정산된 사업(단, 대한대출사업 제외)</p> <p>④ 심사결과 과락기준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대학 : 상환능력평가 결과 하위 20%미만에 포함되는 학교</p> <p>※ 다만,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p> <p>나. 중등이하교 : 상환능력평가 결과 40점 미만교</p> <p>⑤ 최근 3년간 목적 외 사용에 따라 용자금 회수 조치가 취해진 학교 중 용자심사위원회에서 배제를 결정한 사업</p> <p>⑥ 대학재정진단결과 경영위기대학 또는 대학(전문대학)기관평가 미인증대학</p> <p>⑦ 용자 배정 후 사업을 포기한 학교는 포기 연도 이후 최대 3년간 용자 신청 시 용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기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용자 배제(단, 지진 및 화재 등의 재난·안전 피해 복구 사업은 제외)</p> <p>⑧ 용자심사에 필요한 재정자료 미제출교(대학알리미 공시기준일)</p> <p>⑨ 결산 상 미지급금이 존재하는 사학기관은 용자심사 전까지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미지급금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 배제</p>	<p>① (법인 및 교비회계) 건축적립금 합산액이 1,000억원 이상 대학은 용자신청 사업에 적립금 활용 금액만큼 용자지원*하고, 500억원 이상 대학은 용자신청 사업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p> <p>* (예시) 총 사업비 200억원 교육시설 증축사업 추진에 따라 100억원의 적립금 사용 시 100억원 용자(미활용 시 용자회수 조치)</p> <p>※ 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경우에 한하며, 대한대출사업은 적용 제외함.</p> <p>② 교육비환원율이 일정수준(대학 100%, 전문대학 95%)이상 되지 않는 경우 미달비율만큼 용자 제한</p> <p>※ 교육비 환원율=총교육비/등록금수입(단기수강료 제외)</p> <p>* 총교육비 및 등록금수입은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따름</p> <p>③ 기타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제한할 것을 결정한 사업</p>



배제사항	제한사항
<p>⑩ 기타 용자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p> <p>※ 심사일로부터 2년 이내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에 개입되었거나,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적발되어 수사, 재판 중인 사학기관이 신청한 사업으로 용자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결정한 사업 등</p>	

### 3 용자 배정 계획

#### 1 용자 배정액 산출 방법

MIN【 용자한도액\*, 용자신청액 】

\* ①-4. 용자 신청 및 지원 한도의 한도액에 따름

#### 2 용자 배정 기준

- [1순위] (계속사업 우선 배정) 2025년도 예산의 50% 내에서 용자심사위원회  
회의 심의를 통해 계속사업을 선정된 후 용자 최우선 배정
  - ※ 계속사업 우선 배정액은 사업구분별 예산\*의 50% 내에서 배정하며, 차년도 용자기준에  
따른 심사등급, 제한사항, 배제사항을 적용한 후 용자심사위원회에서 배정액을 정함
  - \* '25년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예산 172,840백만원(교육여건 개선사업 70%, 재정여건  
개선사업 30%), '25년 일반 용자 예산 45,223백만원(교육여건 개선사업 60%, 재정여건 개선  
사업 40%)
- (1-1순위) 직전 연도 배정교 중 예산소진에 따른 용자금 미지급교(대환대출  
포함)
- (1-2순위)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계속지원사업\*으로 용자  
신청을 받아 배정된 사업
  - \* 최초 용자금 신청시 부터 다년도 배정을 신청하고 용자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배정된 사업
  - ※ 배정 대상 포함 가능 요건 : 종전 용자 배정 및 지급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어야 하며,  
용자신청 마감일까지 사업이 진행 중(착공 및 계약 체결)인 사업에 한함.
- [2순위] (비수도권 대학 우선 배정) 상환능력평가 결과 상위 50% 이내에  
속하는 비수도권 대학\* 중 최근 3년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평균 90%  
이상교에 우선 배정(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사업에 한함)
  - \* 비수도권 대학 : 서울, 인천, 경기 외 소재 대학
- 비수도권 대학이 신청한 사업의 배정은 사업별 배정 우선순위에 따름
- [3순위] (사업별 배정 우선순위)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재정여건 개선사업  
그룹 내 세부 사업별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순으로 배정

- 각 사업 그룹별 배정 우선순위

<그룹1>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룹2> 재정여건 개선사업
(1순위) 미래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2순위) 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사업 (3순위) 교육지원사업 (4순위) 교육특화 지원사업	(1순위)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 (2순위)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사업 (3순위) 운영비 지원사업 (4순위) 대환대출사업

- 사업 내 배정 우선순위

<그룹1>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룹2> 재정여건 개선사업
<p><b>(1순위) 미래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b></p> (1-1순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 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업 - 스마트(AI, AR/VR)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 시설 환경 조성 및 기자재 구입 (1-2순위) ESG 중 환경(Environment)관련 사업 (1-3순위) 산학협력 관련 사업 (1-3-1) 산학협력 기자재 확충 사업 (1-3-2) 산학협력 시설 관련 사업 (1-4순위) 평생교육 관련 사업 (1-4-1) 평생교육 기자재 확충 사업 (1-4-2) 평생교육 시설 관련 사업 <p><b>(2순위) 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사업</b></p> (2-1순위) 재해 피해 복구 및 방재·방역 지원 (2-1-1) 지진, 화재 피해 시설물 복구 지원 (2-1-2) 내진 보강 및 소방 안전 유해물질(석면 라돈 등) 제거, 안전 설비 확충 등 안전성 강화 사업 (2-1-3)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시설 구축 및 개선, 기자재 구입 등 환경개선 (2-2순위) 노후 환경 개선 (2-2-1)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시설물 (2-2-2)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물 (대수선, 리모델링 포함) (2-2-3) 사용승인 이후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의 이전 사업 및 노후 시설의 개축 (2-2-4) 노후 기자재 개선 지원 (2-3순위) 장애인(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p><b>(1순위)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b></p> (1-1순위) 교육부 통폐합 승인교 구조개선 사업 (1-2순위) 자체 구조개선 사업 <p><b>(2순위)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사업</b></p> (2-1순위) ESG 중 환경(Environment) 관련 사업 (2-2순위)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매입 개보수 및 신증축 ※ 토지매입의 경우 건물 신축 또는 건물 매입에 한하여 지원 <p><b>(3순위) 운영비 지원사업</b></p> (3-1순위) 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운영비 (3-2순위) 상환회계가 법인회계인 운영비 (3-3순위) 상환회계가 병원회계인 운영비 <p><b>(4순위) 대환대출사업</b></p> (4-1순위) 상환회계가 교비회계인 차입금 (4-2순위) 상환회계가 법인회계인 차입금 (4-3순위) 상환회계가 병원회계인 차입금 ※ 위 4-1, 4-2, 4-3순위 사업 내 세부 우선순위는 차입 금리가 큰 사업

<그룹1>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룹2> 재정여건 개선사업
<p><b>(3순위) 교육지원사업</b></p> <p>(3-1순위)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3-2순위) 교육시설 확충 지원사업</p> <p>※ 위 3-1, 3-2순위 사업 내 세부 우선순위</p> <p>① 대학 기숙사 관련 사업 ② 실습 또는 연구시설 확충, IT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원격교육 인프라 조성(시스템, 콘텐츠, 장비·기자재, 서버 등) ③ 교사시설의 리모델링, 대수선, 개·보수 ④ (교육용) 교재·교구·설비의 교체 및 확충 사업 ⑤ 교사시설의 신·증축 ⑥ 교지 매입, 학교 이전 사업</p> <p><b>(4순위) 교육특화 지원사업</b></p> <p>(4-1순위) 부속병원 관련 사업 (4-2순위) 학교기업 관련 사업</p> <p>※ 위 4-1, 4-2순위 사업 내 세부 우선순위</p> <p>① 기자재 확충 사업 ② 시설 관련 사업</p>	
<p>☑ 각 순위별 동점인 경우 심사점수(상환능력평가점수 + 가감점)가 높은 순으로 배정</p> <p>☑ 우선순위 내에서 계약(시설공사의 경우 시공업체 계약) 체결된 사업을 최우선으로 배정</p> <p>☑ 시설물의 용도가 복합적인 경우 연면적의 50%를 초과하는 용도의 사업으로 배정</p>	

○ 용자 배정 관련 기타 사항

- 학교(법인)별 용자 배정액은 백만원 단위로 조정
- 추가배정 시 해당연도 7월 1일(신청 접수일자 기준) 이후 자금을 배정하고자 하는 사업은 계약이 기 체결(대환대출 포함)된 것에 한하여 용자 배정 가능

**※ 사업구분별 '계약이 체결된 사업'의 정의**

- 시설공사(신·증축, 개보수 등) : 시공계약 체결
- 기자재(시스템, 장비) : 시스템구축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 체결
- 교지매입 : 매매계약 체결
- 대환대출 : 대출약정서 체결

### 3 담보조건부 용자 대상교 선정 기준

- (대학) 상환능력평가 결과 하위 2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중 최근 3년 정원내 신입생 충원을 또는 재학생 충원을 평균 80% 미만교에 대해 담보조건으로 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자 대상으로 선정
- (중등이하) 상환능력평가 결과 40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 담보조건으로 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자 대상으로 선정
- (공통)
  - 학교이전사업(위치변경)의 경우 선취담보 조건으로 용자지원
    - ※ 단, 선취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자 조건을 정함
  - 사학기관별 차입금의존율\* 상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담보조건으로 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자 대상으로 선정
    - \* 차입금의존율은 상환능력평가지표 산식에 따라 산출
    - \*\* 학교 부속병원 : 법인회계 및 병원회계 합산 차입금의존율 100%
    - 학교 부속병원 외 용자지원 :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합산 차입금의존율 50%
  - 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담보조건 용자지원 추가 적용 가능
    - ※ 신용용자 대상이라도 학교의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담보조건으로 용자 지원할 수 있음

## 4 용자 사후관리 계획

### 1 서면조사

- (정기) 용자금을 수령한 사학기관은 집행내역을 상·하반기 각 1회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은 사학기관이 용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업별 추진현황 및 완료 여부 등을 조사함
- (수시) 재단은 필요할 경우 사학기관에 수시로 집행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용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사업별 추진현황 등을 조사

### 2 현장조사

- (정기) 5~6월 중 전년도 용자 지원교를 대상으로, 용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용자 신청·청구 시 제출된 서류 원본과 일치 여부, 용자지원 사업 운영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함
- (수시) 재단은 사학비리 발생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 용자금 지급 적정성 검토 등 사학진흥기금 운영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근거: 용자사업규정 제30조(실태조사), 기금용자기본약관 제12조(회보와 조사 등)

### 3 회수조치 사항 ※ 사학진흥기금 용자약정서 제5조 기타 특약사항에 명시

- (건축적립금 사용 확인) 법인 및 교비회계 합산 건축적립금 합산 1,000억원 이상 학교는 신청 사업에 적립금 사용 금액만큼 용자지원 되므로, 사업비에 적립금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미이행 시 용자금 전액 회수 조치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준수)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사업과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관련 대환대출사업(법인회계)은 용자지원 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의 80% 이상 학교로의 전출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시 용자금 전액 회수 조치

※ 교육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해당 기준 적용

- **(임차보증금 사후관리)** 구외 교사시설 임차보증금에 대한 용자 지원액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용자금 전액 회수 조치
  - 용자금 상환기간 중 임대차 계약 해지
  - 임대차 계약서 상의 해당 부동산에 교육 관련 목적으로 미사용
  - 교육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
- **(이전사업 질권설정)** 중등학교법인 및 중등이하 학교의 이전(위치변경)사업은 용자금 지급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해당 용자금을 지급한 예치 계좌에 질권\*을 설정(질권자: 한국사학진흥재단)해야 하며, 해당 기한까지 질권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용자금 전액 회수조치
- \* 용자금 실제 사용(집행)시 목적사업대로 사용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후 질권을 해지하여 용자금 사용(집행)을 위한 인출 가능





사업 제도  
개선 사항

II



# 전년 대비 제도 개선 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90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용자) 452.23억원</li> <li>(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1,728.40억원</li> </ul>													
배정 방법	정기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배분 비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교육여건 개선사업</th> <th>재정여건 개선사업</th> </tr> </thead> <tbody> <tr> <td>60%</td> <td>40%</td> </tr> </tbody> </table> </li> </ul>	교육여건 개선사업	재정여건 개선사업	6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배분 비율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사업 구분</th> <th>교육여건 개선사업</th> <th>재정여건 개선사업</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용자</td> <td>60%</td> <td>40%</td> </tr> <tr> <td>정원증원 의대 용자</td> <td>70%</td> <td>30%</td> </tr> </tbody> </table> </li> </ul>	사업 구분	교육여건 개선사업	재정여건 개선사업	일반 용자	60%	40%	정원증원 의대 용자	70%	30%
	교육여건 개선사업	재정여건 개선사업													
60%	40%														
사업 구분	교육여건 개선사업	재정여건 개선사업													
일반 용자	60%	40%													
정원증원 의대 용자	70%	30%													
예비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배정 시 총 예산의 30% 수준 범위 내에서 예비 순위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기배정 시 총 예산의 50% 수준 범위 내에서 예비 순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범위에 사업의 신청금액 일부만 포함될 경우, 해당 사업 신청금액 전액을 예비배정</li> </ul> </li> </ul>													
용자금 청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체결 사업에 한해 청구 순서대로 지급 &lt;단서 신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좌 동&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에 한해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의 시설 확충 용자는 설계 용역 계약 체결 및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청구 가능</li> </ul> </li> </ul>													
지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한도) 250억원</li> <li>(누적 한도) 법인기준 재산 규모에 따라 600억원~900억원</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사업 구분</th> <th>당해 한도</th> <th>누적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용자*</td> <td>250억원</td> <td>법인기준 재산 규모에 따라 600억원~900억원</td> </tr> <tr> <td>정원증원 의대 용자</td> <td colspan="2">한도 제한 없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한도 및 누적 한도 산출 시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금액”은 제외</li> <li>** '30년까지 한시적 지원 예정이며,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하되 예산 부족 시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li> </ul>	사업 구분	당해 한도	누적 한도	일반 용자*	250억원	법인기준 재산 규모에 따라 600억원~900억원	정원증원 의대 용자	한도 제한 없음**					
사업 구분	당해 한도	누적 한도													
일반 용자*	250억원	법인기준 재산 규모에 따라 600억원~900억원													
정원증원 의대 용자	한도 제한 없음**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자 이자율 산출 방식에 따라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용자) 용자 이자율 산출 방식*에 따라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율 산출 시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관련 금액(공자기금 차입금, 용자 지원금) 모두 제외</li> <li>※ '24.3분기 기준 2.77%</li> </ul> </li> <li>(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고정금리 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에 한함</li> </ul> </li> </ul>													

구분		2024년	2025년
심사 가. 감점	가 산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심사 전까지) 계약 체결된 사업: 5점</li> <li>• 반도체 관련 용자 신청 사업: 5점</li> <li>• ESG 관련* 포함된 사항: 10점(중복일 경우 1개만 적용) * 환경(Environment) 및 사회(Social) 관련 사업</li> <li>• &lt;신 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삭 제&gt;</li> <li>• &lt;삭 제&gt;</li> <li>• &lt;삭 제&gt;</li> <li>•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 5점</li> </ul>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기본역량진단 미참여 및 미선정 대학: 10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삭 제&gt;</li> </ul>
용자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결과 과락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가. 대학 : 상환능력평가 결과 하위 20% 미만에 포함되는 학교 &lt;단서 신설&gt;</li> <li>•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 제한대학 I·II유형' 해당교</li> <li>•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 관련 사업(총 사업비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숙사 신증축/개보수/리모델링 사업, SPC 대응 투자 부담금 제외)</li> <li>• 용자 배정 후 사업을 포기한 학교는 차년도 용자 신청 시 용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기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용자 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결과 과락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가. 대학 : &lt;좌 동&gt;</li> <li>※ 다만,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용자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li> <li>• &lt;삭 제&gt;</li> <li>• &lt;삭 제&gt;</li> <li>• 용자 배정 후 사업을 포기한 학교는 포기 연도 이후 최대 3년간 용자 신청 시 용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기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용자 배제</li> </ul>
사업 내 배정 우선 순위	(1순위) 미래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순위) 포스트코로나 대응 교육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격교육을 위한 인프라 조성(1)</li> <li>- 방역체계 강화(2)</li> <li>- 기숙사 시설유지비 지원</li> </ul> </li> <li>• (1-2순위) 4차 산업혁명 대응 교육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충사업</li> </ul> </li> <li>• (1-3순위) ESG중 환경 관련 사업</li> <li>• (1-4순위) 산학협력 관련 사업</li> <li>• (1-5순위) 평생교육 관련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삭 제&gt;</li> <li>- &lt;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에 통합&gt;</li> <li>- &lt;재해 피해복구 및 방재 지원사업에 통합&gt;</li> <li>- &lt;삭 제&gt;</li> <li>• (1-1순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 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업</li> </ul> </li> <li>• (1-2순위) ESG중 환경 관련 사업</li> <li>• (1-3순위) 산학협력 관련 사업</li> <li>• (1-4순위) 평생교육 관련 사업</li> </ul>
	(2순위) 교육 환경 안전 강화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순위) 재해 피해복구 및 방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2) 재배치&gt;</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순위) 재해 피해복구 및 방재·방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시설 구축 및 개선, 기자재 구입 등 환경 개선</li> </ul> </li> </ul>

구분		2024년	2025년
배정 우선 순위	(3순위) 교육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3-1순위) 및 교육시설 확충 지원사업(3-2순위) 내 세부 우선순위</li> <li>①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의 대학 자부담 사업비(행복기숙사 건립사업 실시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분담금 내에서 지원)</li> <li>② 실습 또는 연구시설 확충, IT인프라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lt;(1) 재배치&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좌 동&gt;</li> <li>① 대학 기숙사 관련 사업</li> <li>② 실습 또는 연구시설 확충, IT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원격 교육 인프라 조성(시스템, 콘텐츠, 장비·기자재, 서버 등)</li> </ul>
	(4순위) 교육 특화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속병원, 학교기업의 재해 피해 복구 및 방재 지원, 노후 시설 개선 지원, 노후 기자재 및 안전 인프라 개선 지원, 장애인(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사업으로 2순위 지원</li> <li>※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1순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삭 제&gt;</li> <li>※ &lt;삭 제&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신 설&gt;</li> <li>&lt;신 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순위 내에서 계약(시설공사의 경우 시공업체 계약) 체결된 사업을 최우선으로 배정</li> <li>시설물의 용도가 복합적인 경우 연면적의 50%를 초과하는 용도의 사업으로 배정</li> </ul>





# 사업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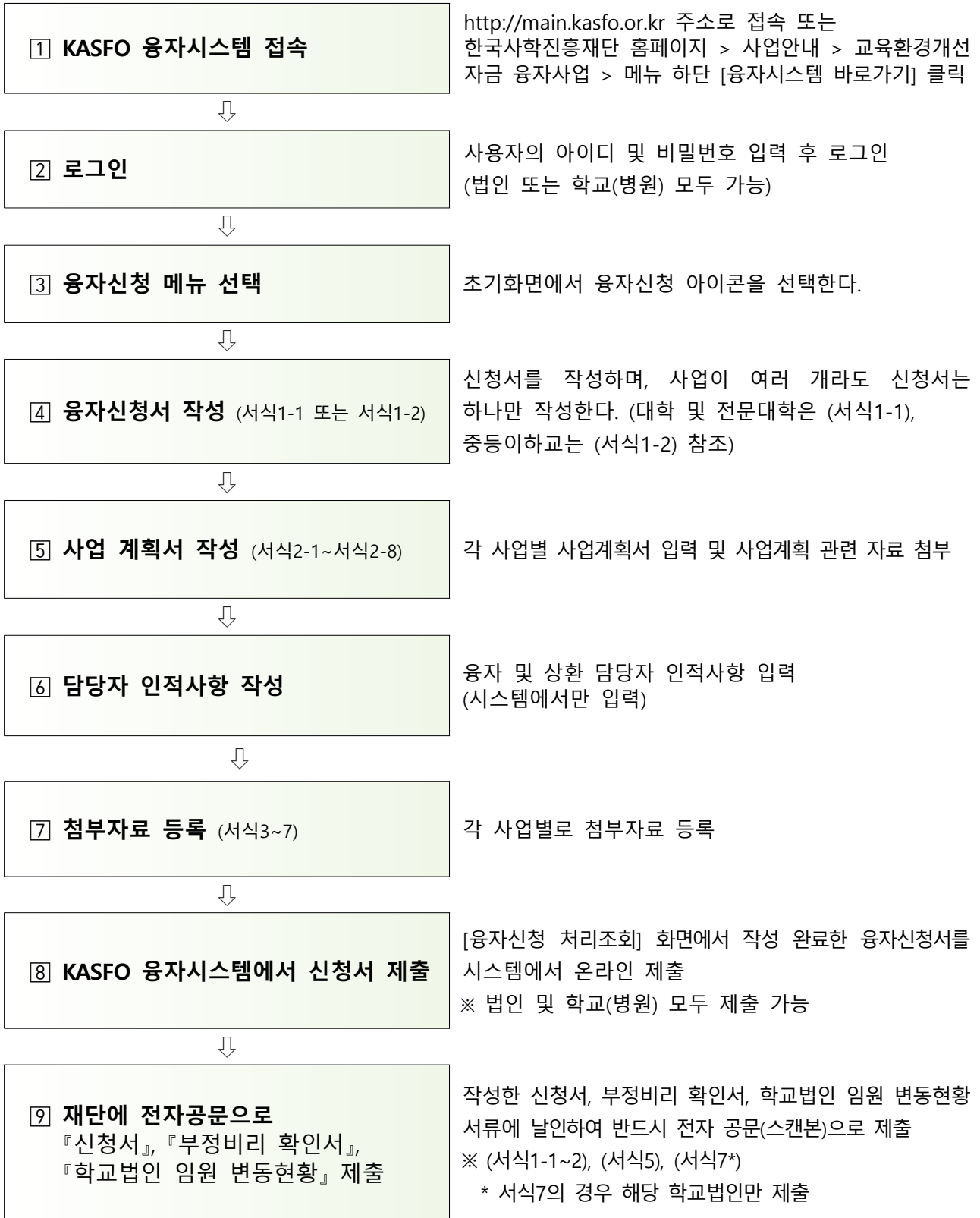
(KASFO 용자시스템)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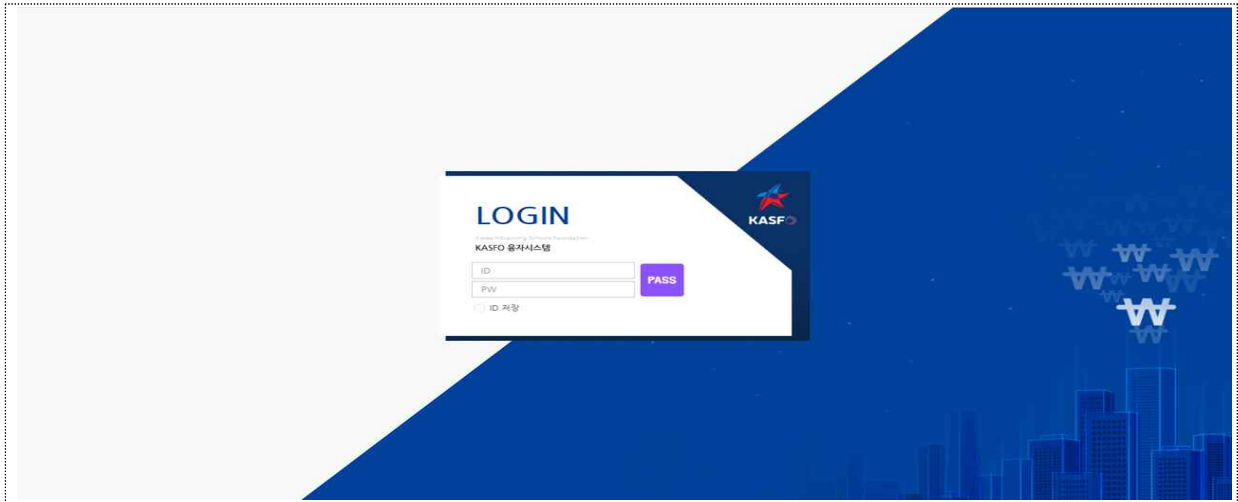
# 1 사업 신청 절차



## 2 용자신청서 작성 방법

1 KASFO 용자시스템 접속(<http://main.kasfo.or.kr>)

2 로그인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법인 및 학교(병원) 모두 가능)



※ 최초 용자 신청교의 경우 재단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아이디 생성

3 용자신청서 작성

(1단계) 용자신청에서 배정연도 2025년 선택 후 [신청서작성] 클릭

선택	배정연도	예산명	신청차수	신청구분	신청기간 시작일	신청기간 종료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5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 용자사업	1	장기신청	2024-09-22	2024-09-23

① 목록에서 배정연도 2025년 선택

②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2단계) 용자신청 팝업화면에서 용자신청서 작성

※ 1.용자신청서 → 2.사업계획서 → 3.담당자 인적사항 → 4.첨부파일 순으로 작성

### [1. 용자신청서]

The screenshot shows the '용자신청' (Applicant Registration) form. Key elements are highlighted with red boxes and numbered 1 through 9:

- 1: 학교선택 (School Selection) dropdown menu.
- 2: [+ ] button for adding a new business application.
- 3: 사업구분 (Business Category) dropdown menu.
- 4: 사업명 (Business Name) input field.
- 5: 신청금액 (Application Amount) and 사업금액 (Business Amount) input fields.
- 6: 상환회계 (Repayment Method) dropdown menu.
- 7: 거치상환 (Interest Accrual) dropdown menu.
- 8: 금리구분 (Interest Rate Category) dropdown menu.
- 9: [서식1] (Form 1) button for uploading a scanned file.

- ① 용자신청교를 목록에서 선택
- ② [+ ] 버튼을 클릭하여 용자 신청사업 생성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 ] 버튼 추가 클릭)
- ③ 목록에서 사업구분\* 선택
  - \*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는 사업구분에 “(증원 의대/부속병원)”이 표기된 항목 중 선택
- ④ 용자신청 사업명 입력
- ⑤ 용자 신청금액과 사업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입력
- ⑥ 용자 원금과 이자액 상환회계를 목록에서 선택
- ⑦ 거치 및 상환기간을 목록에서 선택
- ⑧ 금리구분 선택(일반 용자는 “변동”,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는 “고정”)
- ⑨ [서식1] 용자사업 신청서에 날인한 스캔 파일 업로드

## [2. 사업계획서]

용자신청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담당자인적사항

첨부파일

사업선택 ①

사업1: (교육지원사업(대학)) - 사회과학관 신설

저장
초기화

▶ 사업계획서

②

사업명: 사회과학관 신설

종도: 신중축

사업추진단계: 설계완료

시설구분: 기본시설

사업기간: 2024-09-22 ~ 2025-12-31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시설 신축

신청사유기재

사업예산: 10,000,000,000 원

사업위치: 41069 | 주소찾기 |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신서동)  
한국사학진흥재단

건축연면적: 1,000 m<sup>2</sup> | 토지구매 사업의 경우 건축연면적만에 토지면적 기재

추진경과 및 일정  
(24.1.) 사업 계획 수립  
(24.3.) 설계 용역 계약 체결  
(24.3.) 설계 용역 완료  
(24.10.) 공사 계약 입찰 공고

※ 설계 및 건축허가, 공사계약, 착공일, 준공예정일 등 기재

③

시설이용자

선택	순번	학과	수혜자수	비고
<input type="checkbox"/>	1	심리학과	100	
<input type="checkbox"/>	2	사회학과	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사회복지학과	100	

3개 학과      300명

※ 신청사업 완료시 혜택 받는 학생수를 기재함  
※ 수혜자수는 학부, 대학원 학생수 합을 기재 (명일 외 포함)  
※ 기승사의 경우 학과는 '기승사'로 기재, 비고에는 '기승사 승수 (총 00명, 총 0인 0명)'로 기재

④

시설확보 증가정도

선택	No.	구분	신청사업 전 면적 (A)	신청사업 후 면적 (B)	증가정도	
					면적(C=B-A)	비율(%) (C/A)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건물	0	1,000	1,000	0

⑤

심사반영항목

선택	No.	심사반영항목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대학

⑥

추진단계별 증빙자료

1	계약방법체결 증빙자료	계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Q	다운로드	삭제
2	공통 첨부자료	이사회 회의록	Q	다운로드	삭제
3	공통 첨부자료	자체사업계획서	Q	다운로드	삭제
4	기자재사업	구매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5	기자재사업	구매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6	기자재사업	물품명세서	Q	다운로드	삭제
7	기자재사업	자산등록명세서(대장)	Q	다운로드	삭제
8	시설사업	건축허가서	Q	다운로드	삭제
9	시설사업	공사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10	시설사업	설계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11	시설사업	설계도면	Q	다운로드	삭제
12	시설사업	일시사용승인서 또는 준공필증	Q	다운로드	삭제
13	시설사업	학공신고서(필증)	Q	다운로드	삭제
14	이전사업	권할청 이전승인서	Q	다운로드	삭제
15	토지구매	용기부등본	Q	다운로드	삭제
16	토지구매	매매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17	토지구매	지적도	Q	다운로드	삭제

- ①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을 선택하여 모두 입력
- ② 선택된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사업예산, 추진경과 및 일정 등 입력
- ③ 사업에 따른 이용 대상자 현황 입력(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기술)
- ④ 시설 또는 토지의 증가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증가 면적을 입력
- ⑤ 심사 가감점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을 기재
- ⑥ 사업 추진단계별 증빙자료를 첨부

### [3. 담당자 인적사항]

용자신청
✕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담당자인적사항
첨부파일

사업선택 ①
사업1: (교육지원사업(대학)) - 사회과학관 신설
▼
저장
④

②
용자 담당자 인적사항

\*주소
41069
주소검색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신서동)

\*주소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성명	부서	교육재정지원부	직위	책임	성명	이효리
책임자	*전화	053-770-2500					
	팩스	053-770-2600					
	*E-mail	kasfo004@kasfo.or.kr					
담당자	*직/성명	부서	교육재정지원부	직위	담당	성명	이상순
	*전화	053-770-3500					
	팩스	053-770-2600					

③
상환담당자 인적사항
담당자 정보복사

\*주소
41069
주소검색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신서동)

\*주소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성명	부서	교육재정지원부	직위	책임	성명	이효리
책임자	*전화	053-770-2500					
	팩스	053-770-2600					
	*E-mail	kasfo004@kasfo.or.kr					
담당자	*직/성명	부서	교육재정지원부	직위	담당	성명	이상순
	*전화	053-770-3500					
	팩스	053-770-2600					

- ①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을 선택하여 모두 입력
- ② 용자 신청 담당자 현황 입력
- ③ 용자 신청 담당자와 상환 담당자가 같은 경우 우측 [담당자 정보복사]를 클릭하고, 같지 않은 경우 상환 담당자 현황 입력
- ④ [저장] 버튼 클릭하여 정보 저장(이후 다른 사업도 동일하게 입력)

#### [4. 첨부파일]

첨부파일정보

구분	첨부파일명세	첨부파일 양식	첨부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및 삭제
사업계획서		2-3. 사업계획서(교육지원사업).hwp, 52.00 kB		다운로드 삭제
기본재산보유현황(중등 이하)				다운로드 삭제
부채현황		3. 부채현황.hwp, 50.50 kB		다운로드 삭제
연도별 차입금 상환계획서		4. 연도별 차입금 상환계획서.hwp, 39.00 kB		다운로드 삭제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누인분)		5. 부정·비리사항에 대한 확인서.hwp, 55.50 kB		다운로드 삭제
회계별 미지급(비용)금 변동현황		6. 회계별 미지급(비용)금 변동 현황.hwp, 36.00 kB		다운로드 삭제
학교법인 임원현황(날)		7. 학교법인 임원 변동현황.hwp, 51.00 kB		다운로드 삭제
추진단계별 증빙문서	계약방법체결 증빙자료	계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표비자본		다운로드 삭제
	공통 첨부자료	이사회 회의록		다운로드 삭제
	기자재사업	자체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삭제
		구매결격서		다운로드 삭제
	구매계약서		다운로드 삭제	
	물품명세서		다운로드 삭제	
	자산등록명세서(대장)		다운로드 삭제	

- ①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사업을 선택하여 모든 자료 업로드
- ② 사업계획서, 부채 현황, 부정·비리사항에 대한 확인서, 회계별 미지급금, 상환계획서, 학교법인 임원현황 등 사업별 필수 제출자료 서식을 [첨부파일 양식]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업로드  
※ 업로드 오류 등으로 직접 등록 불가 시 재단 업무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kasfo004@kasfo.or.kr](mailto:kasfo004@kasfo.or.kr)로 파일 송부
- ③ 각 사업의 추진단계 관련 증빙자료를 업로드
- ④ [저장] 버튼 클릭(이후 다른 사업도 동일하게 입력)

#### 4 신청서 제출

- 용자신청서 메뉴에서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담당자 인적사항], [첨부파일]을 모두 입력한 이후 저장된 용자신청서를 제출

신청서 처리조회

선택	배정년도	신청번호	접수구분	학교명	사업명	총신청금액	신청금액	신청일자	작성완료여부	오류여부	오류사유	신청상태
<input type="checkbox"/>	2025	20251421	장기신청	한국사학진흥대학	사회과학관 신설	5,000,000,000	5,000,000,000		Y	N		작성완료

- ① 용자신청서 메뉴 중 [용자신청 처리조회] 클릭
- ② 입력한 세부사업 현황의 [작성완료여부] "Y", [오류여부] "N" 상태임을 확인  
※ [오류여부]가 "Y"인 경우 우측 오류 사유 확인 후 보완 조치 필요
- ③ 용자신청 사업을 선택 후 [제출] 버튼 클릭

### 5) 용자신청서 서식

#### (서식) ①-1. 사학진흥기금 용자 신청서(대학교 및 전문대학)

사학진흥기금 용자 신청서(대학교 및 전문대학)										
일반 현황	법 인 명						이 사 장			
	학 교 명						학 교 장			
	법인주소									
	학교주소									
사업 개 요	신청금액	금 <u>                        </u> 백만원 ₩ <u>                        </u>								
	사업내역 ※ 신청 사업이 2개 이상 시 아래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용자구분 ※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일반 용자 <input type="checkbox"/>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사업구분								
		사업명								
		신청금액	000백만원			사업금액	000백만원			
		(원금)상환회계				(이자)상환회계				
		금리구분 ※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일반 용자)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정원증원 의대 용자)			거치상환기간	년 거치 년 상환			
계속사업 신청여부 ※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계속사업 연도별 용자신청액	'(26년) 000백만원					
					'(27년) 000백만원					
					'(28년) 000백만원					
학생 수 교원 수 현황	입학정원			재 학생 수				교원 수		
	학부	000명	정원내	학부	000명	대학원	000명	전임교원	000명	
	대학원	000명	정원외	학부	000명	대학원	000명	비전임교원	000명	
법인 경영 학교	학 교 명				설립연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증원 ※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증원: 00명)	
	1.									
	2. 3.									
<b>「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b> <b>2025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 용자사업을 신청합니다.</b>										
							년	월	일	
신청인 학교법인			이 사 장			(직 인)				
학 교 명 (병 원 명)			학 교 장 (병 원 장)			(직 인)				
<b>한 국 사 학 진 흥 재 단 이 사 장 귀 하</b>										

(서식) ①-2. 사학진흥기금 용자 신청서(중등이하교)

사학진흥기금 용자 신청서(중등이하교)							
일반 현황	법 인 명		이 사 장				
	학 교 명		학 교 장				
	법인주소						
	학교주소						
사업 개요	신청금액	금                    백만원 ₩ _____					
	사업내역 ※ 신청 사업이 2개 이상 시 아래에 행을 추가하여 작성	사업구분					
		사업명					
		신청금액	백만원	사업금액	백만원		
		(원금)상환회계			(이자)상환회계		
		금리구분	변동금리		거치상환기간	년 거치    년 상환	
		계속사업 신청여부 ※ 해당 항목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예	계속사업 연도별 용자신청액	('26년) 000백만원		
('27년) 000백만원							
('28년) 000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학생 수 교원 수 현황	입학정원	학생 수		교원 수			
	명	명		명			
법인 경영 학교	학 교 명	설 립 연 도		실업계 고등학교 여부	<input type="checkbox"/>		
	1.						
	2. 3.						
<p>「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2025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 용자사업을 신청합니다.</p>							
신청인 학교법인		이 사 장		년	월	일	
				(직 인)			
학 교 명		학 교 장		(직 인)			
<p>한 국 사 학 진 흥 재 단 이 사 장 귀 하</p>							



※ **용자 신청서 세부 작성 방법(시스템 '용자신청서' 상 내용과 일치해야 함)**

**1. 일반현황**

- 용자신청 학교법인 및 학교의 명칭, 주소, 이사장 및 학교장 명칭을 기재

**2. 사업개요 ※ 1개 신청서에 용자 신청사업을 모두 작성**

- **(용자구분)** 용자 신청교가 "대학"인 경우 용자 사업 목적 및 사용주체에 따라 "일반 용자" 또는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중 해당항목에  표기
- **(사업구분)** KASFO용자시스템 [용자신청서] 상의 [사업구분] 선택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교육여건 개선사업	재정여건 개선사업
· 미래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
· 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사업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사업
· 교육지원사업	· 운영비 지원사업
· 교육특화 지원사업*	· 대환대출사업

\*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부속병원 관련 사업은 "교육특화 지원사업"만 선택 가능

- **(사업명)** KASFO용자시스템 '용자신청서' 상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신청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아래를 참고하여 사업명을 작성

※ 사업명에 학교명 기재 절대 금지

○ **대학교 및 전문대학**

- 시설사업 또는 기자재 확충사업 작성 예시
  - ⊙ (좋은 예) AI 교육 실습장 신축, 기숙사 안전 강화를 위한 F동 개보수, 전산원 IT장비 교체
  - ⊙ (나쁜 예) 한국대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명 제외 필요, 사업의 종류를 알 수 없음)
- 대환대출사업의 경우 외부 차입금이 사용된 사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은행자금 내용을 사업명에 적지 않도록 함
  - ⊙ (좋은 예) 기숙사 F동 증축 대환대출, 전산원 IT장비 교체 대환대출
  - ⊙ (나쁜 예) 대구은행 대출, 우리은행 긴급자금 대출 등

○ **중등이하교**

- 시설사업 또는 기자재 확충사업 작성 예시
  - ⊙ (좋은 예) 급식실 증축, 강의동 리모델링, 실습실 확충을 위한 교사시설 신축
  - ⊙ (나쁜 예) 한국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명 제외 필요, 사업의 종류를 알 수 없음)

- **(신청금액)** 2025년도 용자 신청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사업금액)** 신청사업의 계약(예상)금액으로 설계계약, 감리계약, 건축계약 등 사업 추진에 관련된 모든 계약(예상)금액의 총 합계를 기재
  -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배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용자 청구 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됨
- **(상환회계)** 원금과 이자의 상환회계를 각각 기재
- **(금리구분)** 일반 용자의 경우 "변동금리"에  표기,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의 경우 "고정금리"에  표기
  - ※ 중등이하교는 "변동금리"에서 수정 불가

- (거치·상환기간) 사업별 최대 10년\*, 거치기간은 5년 이내로 신청  
\*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계속사업 신청여부 및 연도별 용자신청액)
  - 2025년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용자신청을 하는 경우 '예'에  표기하고 연도별 용자신청액('26년-'28년)을 기재
  - 2025년 한해만 용자를 신청하는 경우 '아니오'에  표기

### 3. 학생수/교원수 현황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0"으로 기재

#### 1) 대학교 및 전문대학

- (입학정원 및 재학생 수) 학부 및 대학원의 입학정원과 재학생 수를 2024년 4월 1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값으로 기재
- (교원수) 전임교원수를 2024년 4월 1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값으로 기재

#### 2) 중등이하교

- 입학정원, 학생수, 교원수를 2024년 4월 1일 학교 알리미 공시된 값 기재

### 4. 법인경영학교

- 용자신청 법인의 소속학교를 모두 기재(대학~유치원까지 모두 입력)

### 5.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증원

- 용자구분을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로 선택한 경우 '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를 "해당"으로 로 표기하고 '25학년도 증원\* 인원을 추가로 기재  
\* '24학년도 현재 의과대학 정원이 80명에서 '25학년도 120명으로 확대된 경우 "40명" 작성

### 3

## 용자신청서 첨부자료별 작성 방법

### 1 교육여건 개선사업

#### (서식) ②-1. 사업 계획서(미래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미래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용도						
	사업 추진단계						
	시설 구분선택						
	사업기간	【     】 ~ 【     】					
	사업예산	총 【     】 백만원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구분	자체자금			차입금	기타
			학교회계	법인회계	병원회계	외부차입금 등	국고보조금, 기타 등
	조달금액						
	교내/교외 및 지역	① 교내 <input type="checkbox"/> 교외 <input type="checkbox"/> ② 지역 : 【     】					
사업위치							
건축연면적/기자재 수량							
추진경과 및 일정							
2. 사업계획 (투자효과)	① 시설 및 기자재 이용자 : 총 【     】 명 (※ 기숙사 사업의 경우 학과는 기숙사 구분(기숙사 **동) 으로, 비교에는 기숙사 실수 (총 **실, *인 *실) 기재)						
	학 과	수혜자수(명)	비 고				
	②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증가정도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m<sup>2</sup>(연면적), 개수, %)</span>						
	구분	신청사업전 면적/수량(A)	신청사업후 면적/수량(B)	증 가 정 도			
				증 감(C=B-A)	비 율(C/A)		
	토 지						
	건 물						
	기자재						
③ 연도별 투자액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2024년 말까지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④-1. 건물 용도							
	구분	면적(m <sup>2</sup> )	용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2. 토지 용도 (※ 토지매입 또는 이전사업 관련 사업만 작성 요망)		
	면적 (㎡)	용도	
	④-3. 기자재 용도 및 시설유지비(※ 기자재 관련사업과 기숙사 시설유지비만 작성 요망)		
	학과명(기숙사명)	품목(계정과목)	수량(금액)
			용도(산출내역)
3. 심사반영 입력항목	<input type="checkbox"/>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교(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5점)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30일 이상 연체(-5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1차 -10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2차 -15점)		
	4. 기타사항	용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 착수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상 착수 <input type="checkbox"/> 일정 변경 <input type="checkbox"/> 포기

**(서식) ②-2. 사업 계획서(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사업)**

<b>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사업 계획서</b>						
<b>1. 사업개요</b>	사업명					
	용자구분 <small>※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small>	<input type="checkbox"/> 일반 용자 <input type="checkbox"/>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사업용도					
	사업 추진단계					
	시설 구분선택					
	사업기간	【           】 ~ 【           】				
	사업예산	총 【           】 백만원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구분	자체자금		차입금	기타
		조달금액	학교회계	법인회계	병원회계	외부차입금 등 국고보조금, 기타 등
	교내/교외 및 지역	① 교내 <input type="checkbox"/> 교외 <input type="checkbox"/> ② 지역 : 【           】				
사업위치						
건축연면적/기자재 수량						
추진경과 및 일정	노후 건물 건축연도					
	건축물 사용승인일자					
	정밀안전진단결과					
<b>2. 사업계획 (투자효과)</b>	<b>① 시설 및 기자재 이용자 : 총 【           】 명</b> <small>(※ 기숙사 사업의 경우 학과는 '기숙사 구분(기숙사 **등)' 으로, 비교에는 기숙사 실수 (총 **실, *인 *실) 기재 요망)</small>					
	학 과	수혜자수(명)	비 고			
	<b>②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증가정도</b> <span style="float: right;"><small>(단위 : m<sup>2</sup>(연면적), 개수, %)</small></span>					
	구분	신청사업전 면적/수량(A)	신청사업후 면적/수량(B)	증 가 정 도		
				증 감(C=B-A)	비 율(C/A)	
	토 지					
	건 물					
	기자재					
	<b>③ 연도별 투자액</b> <span style="float: right;"><small>(단위 : 백만원)</small></span>					
2024년 말까지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b>④-1. 건물 용도</b>						
구분	면적(m <sup>2</sup> )	용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2. 토지 용도 (※ 토지매입 또는 이전사업 관련 사업만 작성 요망)			
	면적(m <sup>2</sup> )	용도		
	④-3. 기자재 용도 (※ 기자재 관련사업만 작성 요망)			
	학과명	품목	수량	용도
3. 심사반영 입력항목	<input type="checkbox"/>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교(5점)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5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1차 -10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2차 -1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30일 이상 연체(-5점)	
4. 기타사항	용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 착수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상 착수 <input type="checkbox"/> 일정 변경 <input type="checkbox"/> 포기	

**(서식) ②-3. 사업 계획서(교육지원 사업)**

<b>교육지원 사업 계획서</b>						
1. 사업개요	사업명					
	용자구분 ※ 해당 항목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일반 용자 <input type="checkbox"/>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사업용도					
	사업 추진단계					
	시설 구분선택					
	사업기간	【            】 ~ 【            】 (※기숙사 관련 사업일 경우 공사기간 및 개관 예상시기 기재 요망)				
	사업예산	총 【            】 백만원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구분	자체자금		차입금	기타
		조달금액	학교회계	법인회계	병원회계 외부차입금 등	기타 국고보조금, 기타 등
	예상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축비	부대비용	계	
		예상 총사업비				
(※기숙사 관련 사업만 작성 요망)						
교내/교외 및 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교내 <input type="checkbox"/> 교외 <input type="checkbox"/> ② 지역 : 【            】					
사업위치						
건축연면적/기자재 수량						
시설의 규모	지하 (    )층, 지상 (    )층 (※기숙사 관련 사업만 작성 요망)					
추진경과 및 일정						
2. 사업계획 (투자효과)	<b>① 시설 및 기자재 이용자 : 총 【            】 명</b> (※ 기숙사 사업의 경우 학과는 '기숙사 구분(기숙사 **동)' 으로, 비교에는 기숙사 실수 (총 **실, *인 *실) 기재 요망)					
	학 과	수혜자수(명)	비 고			
	계					
	<b>②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증가정도</b> (단위 : m <sup>2</sup> (연면적), 개수, %)					
	구분	신청사업전 면적/수량(A)	신청사업후 면적/수량(B)	증 가 정 도		
	토 지			증 감(C=B-A)	비 율(C/A)	
	건 물					
	기자재					
계						
<b>③ 연도별 투자액</b> (단위 : 백만원)						
2024년 말까지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b>2. 사업계획 (투자효과)</b>	<b>④-1. 건물 용도</b>			
	구분		면적(㎡)	용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3. 심사반영 입력항목</b>	<b>④-2. 토지 용도</b> (※ 토지매입 또는 이전사업 관련 사업만 작성 요망)			
	면적(㎡)		용도	
<b>4. 기타사항</b>	<b>④-3. 기자재 용도</b> (※ 기자재 관련사업만 작성 요망)			
	학과명	품목	수량	용도
<input type="checkbox"/>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교(5점)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5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1차 -10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2차 -1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30일 이상 연체(-5점)		
용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 착수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상 착수 <input type="checkbox"/> 일정 변경 <input type="checkbox"/> 포기	



서식) ②-4. 사업 계획서(교육 특화지원 사업)

교육 특화지원 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용자구분 ※ 해당 항목에 ☑ 표시 <input type="checkbox"/> 일반 용자 <input type="checkbox"/>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사업용도				
	사업 추진단계				
	시설 구분선택				
	사업기간	【           】 ~ 【           】			
	사업예산	총 【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체자금		차입금
		조달금액	학교회계	법인회계	병원회계
			외부차입금 등	기타 국고보조금, 기타 등	
교내/교외 및 지역	① 교내 <input type="checkbox"/> 교외 <input type="checkbox"/> ② 지역 : 【           】				
사업위치					
건축연면적/기자재 수량					
추진경과 및 일정					
2. 사업계획 (투자효과)	① 시설 및 기자재 이용자 : 총 【           】 명 (※ 기숙사 사업의 경우 학과는 '기숙사 구분(기숙사 **동)' 으로, 비교에는 기숙사 실수 (총 **실, *인 *실) 기재 요망)				
	학 과	수혜자수(명)	비 고		
	계				
	②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증가정도 (단위 : m <sup>2</sup> (연면적), 개수, %)				
	구분	신청사업전 면적/수량(A)	신청사업후 면적/수량(B)	증 가 정 도	
	토 지			증 감(C=B-A)	비 율(C/A)
	건 물				
	기자재				
계					
③ 연도별 투자액 (단위 : 백만원)					
2024년 말까지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④-1. 건물 용도					
구분	면적(m <sup>2</sup> )	용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2. 토지 용도 (※ 토지매입 또는 이전사업 관련 사업만 작성 요망)					
면적(m <sup>2</sup> )	용도				

	④-3. 기자재 용도 (※ 기자재 관련사업만 작성 요망)		
	학과명	품목	수량
			용도
<b>3. 심사반영 입력항목</b>	<input type="checkbox"/>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교(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5점)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30일 이상 연체(-5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1차 -10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2차 -15점)		
<b>4. 기타사항</b>	융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 착수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상 착수 <input type="checkbox"/> 일정 변경 <input type="checkbox"/> 포기

## ※ 사업계획서 세부 작성방법

### 1. 사업 개요

- **(사업명)** KASFO용자시스템 '용자신청서' 상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신청사업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명을 작성
- **(용자구분)** 신청사업의 추진 주체에 따라 "일반 용자"와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표기
  - ※ 사업구분이 "미래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 ※ 용자신청서 상의 [용자구분]과 동일한 항목에 표기
- **(사업용도)** 신청사업의 종류를 아래를 참고하여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신.증축", "개.보수(리모델링)" 중 해당 사항 기재
  - 기자재 사업의 경우 "기자재" 기재
  - IT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시스템" 기재
  - 원격교육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 개발비" 기재
  - 산학협력 또는 평생교육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확충의 경우 해당사항 기재
- **(사업 추진단계)** 신청일 현재 사업의 추진단계를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계획구상", "계획수립", "계획추진", "설계추진", "설계완료", "건축허가", "공사계약", "공사진행", "준공" 중에 해당사항 기재
  - 기자재 사업의 경우 "계획구상", "계획수립", "계약체결", "납품완료" 중에 해당 사항 기재
  - 연구개발, IT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은 "계획수립", "계약체결", "연구개발 진행 중", "납품완료" 중 해당사항 기재
  - 선택된 사업의 추진단계는 첨부자료로 확인이 되어야 인정되므로 KASFO용자시스템 용자신청 [사업계획서] 입력탭 하단 [추진단계별 증빙문서]에 반드시 해당 증빙자료 첨부

### <KASFO용자시스템 사업 추진단계별 증빙자료 첨부화면>

용자신청	사업계획서	담당자인계사항	첨부파일
사업선택	사업1: (교육지원사업(대형)) - 사회과학관 신설		
추진단계별 증빙문서	1	계약방법별 증빙자료	계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공종 첨부자료	이사회 회의록
	3	공종 첨부자료	자체사업계획서
	4	기자재사업	구매견적서
	5	기자재사업	구매계약서
	6	기자재사업	품명명세서
	7	기자재사업	자산총량명세서(대장)
	8	시설사업	건축허가서
	9	시설사업	공사계약서
	10	시설사업	설계계약서
	11	시설사업	설계도면
	12	시설사업	일시사용승인서 또는 준공필증
	13	시설사업	확충신고서(필증)
	14	이전사업	관할청 이전승인서
	15	토지구매	통기부등본
	16	토지구매	매매계약서
	17	토지구매	지적도

☞ **공통 첨부자료** : 「자체사업계획서(필수)」, 이사회 개최 된 경우 「이사회 회의록(선택)」

☞ **시 설 사 업** :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설계도면」, 「착공신고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준공필증」

ex) 계약체결과 관련된 내부결재문서, 입찰공고 캡처화면 등

☞ **기자재(물품 구입), IT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사업** : 「물품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자산등록명세서(대장)」,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공사계약서의 경우 설계, 감리, 건축계약서 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계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는 첨부한 모든 계약서 계약금의 합과 동일해야 하며, 사업 추진단계 중 계약이 미체결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정 금액으로 사업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ex) 설계용역 계약체결 완료(5억원), 건설공사용역 계약 미체결(100억원)인 경우 사업비는 105억원으로 작성하고 설계용역 계약서를 첨부함

※ 계약서가 여러 업체로 나뉘어져 계약된 경우, 별도로 계약현황 요약표를 만들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납품일)

○ **(시설 구분선택)** 신청사업에 대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구분되어 있는 교사 시설의 구분을 준용하여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중 해당하는 항목을 기재

- 중등이하교의 경우 교사·도서관은 "기본시설", 기숙사·급식시설은 "지원시설", 체육관·강당은 "부속시설", 나머지는 "기타"로 기재

- 기자재 사업의 경우 "기자재"로 기재

- IT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시스템"으로 기재

- 그 외 항목은 "기타"로 기재

☞ **기본시설** :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 **지원시설** : 강당, 전자계산소,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 **연구시설** :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 **부속시설**

-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 산학협력단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농학계열의 경우 농장, 농장건물 및 농장가동장,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학술림, 임산가공장

- 공학계열의 경우 공장, 항공기, 격납고

- 수산·해양계열의 경우 실습선, 수산가공장,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공장

- 약학계열의 경우 약초원, 실습약국, 제약실습공장

- 의학계열의 경우 부속병원, 동물병원

☞ **기타시설**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함

- **(사업기간)** 신청사업의 사업기간을 아래를 참고하여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기간
  - 기자재, 연구, IT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계약체결에서 납품일(완성일)까지의 기간
- **(사업예산)** 용자신청서에서 입력한 사업금액을 기재
- **(교내/교외 및 지역)** 교내/교외에  표기 및 사업장 소재지역 기재
  - 지역의 경우 사업위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
- **(사업위치)**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
  - 교외의 경우 학교주소를 적지 말고 반드시 해당 사업위치를 기재
- **(건축연면적/기자재 수량)** 시설사업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을, 기자재는 수량을 기재
- **(추진 경과 및 일정)** 신청사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정을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건축설계, 건축허가, 건축계약, 착공, 완공까지의 경과 및 일정을 기재
  - 기자재 사업의 경우 자체계획수립, 계약체결, 납품완료 경과 및 일정을 기재
  - IT 인프라 구축, 연구 사업의 경우 자체계획수립, 계약체결, 완료 경과 및 일정을 기재
  - 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사업의 경우 노후건물 건축연도, 사용승인일자를 기재 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ex) 사업개요 입력예시

<b>1. 사업개요</b>	사업명	사회과학관 신축사업																					
	용자구분 ※ 해당 항목에 0 표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용자 <input type="checkbox"/>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사업종도	신·증축																					
	사업 추진단계	설계완료																					
	시설 구분선택	기본시설																					
	사업기간	【 2024 】 ~ 【 2027 】																					
	사업예산	총 【 90,000 】 백만원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자체 자금</th> <th colspan="2">차입금</th> <th>기타</th> </tr> <tr> <th>학교회계</th> <th>법인회계</th> <th>병원회계</th> <th>외부차입금 등</th> <th>국고보조금, 기타 등</th> </tr> <tr> <td>조달금액</td> <td>30,000</td> <td>30,000</td> <td></td> <td>30,000</td> <td></td> </tr> </table>					구분	자체 자금		차입금		기타	학교회계	법인회계	병원회계	외부차입금 등	국고보조금, 기타 등	조달금액	30,000	30,000		30,000	
	구분	자체 자금		차입금		기타																	
		학교회계	법인회계	병원회계	외부차입금 등	국고보조금, 기타 등																	
	조달금액	30,000	30,000		30,000																		
교내/교외 및 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내 <input type="checkbox"/> 교외 <input type="checkbox"/> 지역 : 【 대구 】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대로 345 사학대학교																						
건축연면적/기자재 수량	300m <sup>2</sup>																						
추진경과 및 일정	설계동역 계약체결(2024.1.) 설계동역 완료(2024.12.) 건축허가 신청(2025.1. 예정) 건축계약 공고(2025.3. 예정) 건축계약 체결(2025.7. 예정) 착공(2025.10. 예정) 준공(2027.12. 예정)																						

**2. 사업계획(투자효과)**

- **(시설 및 기자재 이용자)** 신청사업의 수혜 받는 학생수를 기재
  - 수혜자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 수 합을 기재(정원 외 포함)
  - 연구, IT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관련 교과과정 학생 수, 시스템 이용자 또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구성원 수 등을 기재

-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증가정도)** 해당 신청사업의 기존 면적(수량)과 사업이 완료된 후 면적(수량)을 기재하며, 물품 및 연구의 경우 0으로 기재
  - 사업 완료 후의 면적, 수량은 사업개요의 건축 연면적 또는 수량과 일치하도록 기재
  - 시설사업은 사업 완료 전-후 면적에 해당 신청사업의 면적만 기재(교사 전체 면적을 적지 않도록 유의)
  - 기자재 사업은 용자 신청 전 수량과 구입 후 수량을 기재
  - IT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연도별 투자액)**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연도별 사업비를 기재
- **(건물 용도)** 건물 면적별 사용 용도를 기재(건물의 층별 사용 면적 및 해당 학과)
- **(토지 용도)** 토지매입 및 이전사업 관련 사업만 작성하며, 면적과 사용 용도를 기재
- **(기자재 용도)** 기자재를 활용하는 학과 및 품목, 수량, 용도를 기재

ex) 사업효과 입력예시(기숙사 신축 사업)

<b>2. 사업계획 (투자효과)</b>	① 시설 및 기자재 이용자 : 총 【 60 】 명 (※ 기숙사 사업의 경우 학과는 기숙사 구분(기숙사 **동) 으로, 비교에는 기숙사 실수 (총 **실, *인 *실) 기재)				
	학 과	수혜자수(명)	비 고		
	사학빌 원룸 1동	40	총 20실, 2인 1실		
	사학빌 원룸 2동	20	총 10실, 2인 1실		
	합계	60			
	②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증가정도 (단위 : m <sup>2</sup> (연면적),개수,%)				
	구분	신청사업전 면적/수량(A)	신청사업후 면적/수량(B)	증 가 정 도	
				증 감(C=B-A)	비 율(C/A)
	토 지	-	-	-	-
	건 물	-	825	825	100
	기 자 재	-	-	-	-
	③ 연도별 투자액 (단위 : 백만원)				
	2024년 말까지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100	10,000	10,000	5,000	25,100

### 3. 심사반영 입력항목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기

가산점 항목	감점 항목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대학(전문)혁신지원사업 선정교의 사업 : 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대학 및 전문대학 : 5점(2023회계연도 기준)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 : 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30일 이상 연체실적 학교(법인) : 5점 <input type="checkbox"/>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위반 : 10점</li> <li>• 2차 위반 : 15점</li> </ul> <p>※ 다만, 「용자사업규정」 제16조(용자 배제 및 제한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및 동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해당되어 용자배제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 법인의 이전 임원이나 이전 학교의 장의 부정·비리 및 관리·부실로 인한 1차 위반처분과 2차 위반처분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미표기</p>

### 4. 기타사항

- 용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대로 착수 가능 여부를 "정상 착수", "일정 변경", "(사업)포기" 중 선택

② 재정여건 개선사업

(서식) ②-5. 사업 계획서(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small>※ 해당 항목에 ☑ 표기</small>	<input type="checkbox"/> 타 법인간 대학통합 사업 <input type="checkbox"/> 동일 법인간 대학통합 사업 <input type="checkbox"/> 자체 구조조정 사업					
	사업 필요성						
	사업용도						
	사업 추진단계						
	시설 구분선택						
	사업기간	【     】 ~ 【     】					
	사업예산	총 【     】 백만원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구분	자체자금			차입금	기타
		조달금액	학교회계	법인회계	병원회계	외부차입금 등	국고보조금, 기타 등
교내/교외 및 지역	① 교내 <input type="checkbox"/> 교외 <input type="checkbox"/> ② 지역 : 【     】						
사업위치							
건축연면적/ 기자재 수량							
추진경과 및 일정							
2. 사업계획 (투자효과)	① 시설 및 기자재 이용자 : 총 【     】 명 (※ 기숙사 사업의 경우 학과는 '기숙사 구분(기숙사 **동)' 으로, 비교에는 기숙사 실수 (총 **실, *인 *실) 기재 요망)						
	학 과	수혜자수(명)	비 고				
	계						
	②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증가정도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m<sup>2</sup>(연면적),개수,%)</span>						
구분	신청사업 전 면적/수량(A)	신청사업 후 면적/수량(B)	증 가 정 도				
			증 감(C=B-A)	비 율(C/A)			
토 지							
건 물							
기자재							
계							
③ 연도별 투자액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2024년 말까지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④-1. 건물 용도							
구분	면적(m <sup>2</sup> )	용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2. 사업계획 (투자효과)</b>	<b>④-2. 토지 용도</b> (* 토지매입 또는 이전사업 관련 사업만 작성 요망)			
	면적 (㎡)	용도		
<b>④-3. 기자재 용도</b> (* 기자재 관련사업만 작성 요망)				
학과명	품목	수량	용도	
<b>⑤-1 구조개선을 통한 대학운영 개선 효과</b> - (효과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				
<b>⑤-2 지표개선 효과</b>				
(단위:%, 명)				
<b>지 표</b>	<b>기 존</b>	<b>구조개선 후 기대효과</b>	<b>증감 (증감률)</b>	<b>비 고</b>
교육용 기본재산 확보율	95%	105%	10%(10.5%)	사업계획서 25p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	-	
교원확보율	55%	60%	5%(9.1%)	사업계획서 35p
학생등록률	85%	95%	10%(11.8%)	사업계획서 36p
입학정원	500	400	△100(△20%)	사업계획서 50p
※ 기존 수치는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 (대학 알리미 공시기준)하고 해당사항만 기재 ※ 구조개선 후 기대효과 수치 제출한 자체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 (비고에 사업계획서 페이지 기재) ※ 구조개선 계획이 다년간인 경우에는 평균치 기재 ※ 사업계획서에 해당 지표의 근거가 언급되지 않은 경우 비고에 근거를 별도 기재				
<b>3. 심사반영 입력항목</b>	<input type="checkbox"/>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교(5점)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5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1차 -10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2차 -1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30일 이상 연체(-5점)	
<b>4. 기타사항</b>	융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 착수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상 착수 <input type="checkbox"/> 일정 변경 <input type="checkbox"/> 포기	



※ 세부 작성방법

<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 유형 >

- 학교 통·폐합 후 교육용 시설 신·증축, 개·보수 사업
- 학교 통·폐합 시 교육용 기자재 확충사업
- 학교 통·폐합 시 시스템 통합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사업 등 유·무형 고정자산 취득 사업지원

1. 사업 개요

- **(사업명)** KASFO용자시스템 '용자신청서' 상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신청사업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명을 작성
- **(사업내용)** 추진하고자 하는 구조개선 사업이 해당하는 항목에  표기
- **(사업 필요성)**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기재
- **(사업용도)** 신청사업의 종류를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신·증축", "개·보수(리모델링)" 중 해당 사항 기재
  - 기자재 사업의 경우 "기자재" 기재
  - IT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시스템" 기재
- **(사업 추진단계)** 신청일 현재 사업의 추진단계를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계획구상", "계획수립", "계획추진", "설계추진", "설계완료", "건축허가", "공사계약", "공사진행", "준공" 중에 해당사항 기재
  - 기자재 사업의 경우 "계획구상", "계획수립", "계약체결", "납품완료" 중에 해당 사항 기재
  - IT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은 "계획수립", "계약체결", "연구·개발 진행 중", "납품 완료" 중 해당사항 기재
  - 선택된 사업의 추진단계는 첨부자료로 확인이 되어야 인정되므로 KASFO용자시스템 용자신청 [사업계획서] 입력탭 하단 [추진단계별 증빙문서]에 반드시 해당 증빙자료 첨부

<KASFO용자시스템 사업 추진단계별 증빙자료 첨부화면>

사업선택	저장	초기화
1 계약방법체결 증빙자료	계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운로드 삭제
2 공통 첨부자료	이사회 회의록	다운로드 삭제
3 공통 첨부자료	자체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삭제
4 기자재사업	구매견적서	다운로드 삭제
5 기자재사업	구매계약서	다운로드 삭제
6 기자재사업	물품명세서	다운로드 삭제
7 기자재사업	자산등록명세서(대장)	다운로드 삭제
8 시설사업	건축허가서	다운로드 삭제
9 시설사업	공사계약서	다운로드 삭제
10 시설사업	설계계약서	다운로드 삭제
11 시설사업	설계도면	다운로드 삭제
12 시설사업	일시사용승인서 또는 준공필증	다운로드 삭제
13 시설사업	확공신고서(필증)	다운로드 삭제
14 이전사업	관할청 이전승인서	다운로드 삭제
15 토지구매	통기부등본	다운로드 삭제
16 토지구매	매매계약서	다운로드 삭제
17 토지구매	지적도	다운로드 삭제
18 토지구매	토지대장 또는 임대대장	다운로드 삭제

☞ **공통 첨부자료** : 「자체사업계획서(필수)」, 이사회 개최 된 경우 「이사회 회의록(선택)」

☞ **시 설 사 업** :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설계도면」, 「착공신고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준공필증」

ex) 계약체결과 관련된 내부결재문서, 입찰공고 캡처화면 등

☞ **기자재(물품 구입), IT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사업** : 「물품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자산등록명세서(대장)」,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공사계약서의 경우 설계, 감리, 건축계약서 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계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는 첨부한 모든 계약서 계약금의 합과 동일해야 하며, 사업 추진단계 중 계약이 미체결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정 금액으로 사업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ex) 설계용역 계약체결 완료(5억원), 건설공사용역 계약 미체결(100억원)인 경우 사업비는 105억원으로 작성하고 설계용역 계약서를 첨부함

※ 계약서가 여러 업체로 나뉘어져 계약된 경우, 별도로 계약현황 요약표를 만들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납품일)

○ **(시설 구분선택)** 신청사업에 대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구분되어 있는 교사 시설의 구분을 준용하여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기타시설" 중 해당하는 항목을 기재

- 중등이하교의 경우 교사·도서관은 "기본시설", 기숙사·급식시설은 "지원시설", 체육관·강당은 "부속시설", 나머지는 "기타"로 기재

- 기자재 사업의 경우 "기자재"로 기재

- IT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시스템"으로 기재

- 그 외 항목은 "기타"로 기재

☞ **기본시설** : 강의실, 실험실습실, 행정실,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

☞ **지원시설** : 강당, 전자계산소,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

☞ **연구시설** :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 **부속시설**

-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 산학협력단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농학계열의 경우 농장, 농장건물 및 농장가동장,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학술림, 임산가공장

- 공학계열의 경우 공장, 항공기, 격납고

- 수산·해양계열의 경우 실습선, 수산가공장,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기관공장

- 약학계열의 경우 약초원, 실습약국, 제약실습공장

- 의학계열의 경우 부속병원, 동물병원

☞ **기타시설**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기타시설로 분류함

- **(사업기간)** 신청사업의 사업기간을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기간, 기자재 사업의 경우 계약체결에서 납품일(완성일)까지의 기간을 기재, IT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계약체결에서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
- **(사업예산)** 용자신청서에서 입력한 사업금액을 기재
- **(교내/교외 및 지역)** 교내/교외에  표기 및 사업장 소재지역 기재
  - 지역의 경우 사업위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
- **(사업위치)**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
  - 교외의 경우 학교주소를 적지 말고 반드시 해당 사업위치를 기재
- **(건축연면적/기자재 수량)** 시설사업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을, 기자재는 수량을 기재
- **(추진 경과 및 일정)** 신청사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정을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건축설계, 건축허가, 건축계약, 착공, 완공까지의 경과 및 일정을 기재
  - 기자재 사업의 경우 자체계획수립, 계약체결, 납품완료 경과 및 일정을 기재
  - IT 인프라 구축, 연구 사업의 경우 자체계획수립, 계약체결, 완료 경과 및 일정을 기재

ex) 사업개요 입력예시

<b>1. 사업개요</b>	사업명	학교통합에 따른 통합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내용 ※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input type="checkbox"/> 타 법인간 대학통합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일 법인간 대학통합 사업 <input type="checkbox"/> 자체 구조조정 사업				
	사업 필요성	○ 학교통합 교육부 승인(2024.1.)으로 통합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대학운영 효율화 필요				
	사업용도	시스템				
	사업 추진단계	계약체결				
	시설 구분선택	해당 없음				
	사업기간	【 2024.6. 】 ~ 【 2026.6. 】				
	사업예산	총 【 1,000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체자금		차입금	기타
		학교회계	법인회계	병원회계	외부차입금 등	국고보조금, 기타 등
조달금액	500			500		
교내/교외 및 지역	① 교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외 <input type="checkbox"/> ② 지역 : 【 대구 】					
사업위치	대구광역시 혁신대로 345					
건축연면적/ 기자재 수량	해당 없음					
추진경과 및 일정	대학평의회 의결(2023.10.) 이사회 의결(2023.11.) 교육부 구조개선 계획 승인(2024.1.) 통합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2024.3.) 업체 계약 체결(2024.6) 시스템 개발 완료(2026.6 예정)					

## 2. 사업계획(투자효과)

- **(시설 및 기자재 이용자)** 신청사업의 수혜를 받는 학생수를 기재
  - 수혜자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 수 합을 기재(정원 외 포함)

- 연구 사업의 경우 관련 연구를 통한 교과과정 대상자 수를 기재
- IT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체 이용자 또는 관리대상자 수를 기재
  - ex) 학사관리시스템 구축은 전체 전체 학생수,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은 전체 교직원수 등
-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증가정도)** 해당 신청사업의 기존 면적(수량)과 사업이 완료된 후 면적(수량)을 기재하며, 물품 및 연구의 경우 0으로 기재
  - 사업 완료 후의 면적, 수량은 사업개요의 건축 연면적 또는 수량과 일치하도록 기재
  - 시설사업은 사업 완료 전-후 면적에 해당 신청사업의 면적만 기재(교사 전체 면적을 적지 않도록 유의)
  - 기자재 사업은 용자 신청 전 수량과 구입 후 수량을 기재
  - IT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연도별 투자액)**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연도별 사업비를 기재
- **(건물 용도)** 건물 면적별 사용 용도를 기재(건물의 층별 사용 면적 및 해당 학과)
- **(토지 용도)** 토지매입 및 이전사업 관련 사업만 작성하며, 면적과 사용 용도를 기재
- **(기자재 용도)** 기자재를 활용하는 학과 및 품목, 수량, 용도를 기재
- **(구조개선을 통한 대학운영 개선 효과)** 신청사업을 통한 대학운영의 개선 효과를 기재
- **(지표개선 효과)** 구조개선 추진에 따른 지표개선 효과를 기재

### 3. 심사반영 입력항목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기

가산점 항목	감점 항목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대학(전문)혁신지원사업 선정교의 사업 : 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대학 및 전문대학 : 5점(2023회계연도 기준)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 : 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30일 이상 연체실적 학교(법인) : 5점 <input type="checkbox"/>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위반 : 10점</li> <li>• 2차 위반 : 15점</li> </ul> <p>※ 다만, 「용자사업규정」 제16조(용자 배제 및 제한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및 동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해당되어 용자배제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의 이전 임원이나 이전 학교의 장의 부정·비리 및 관리·부실로 인한 1차 위반처분과 2차 위반처분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미표기</p>

### 4. 기타사항

- 용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대로 착수 가능 여부를 "정상 착수", "일정 변경", "(사업)포기" 중 선택

**(서식) ②-6. 사업 계획서(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지원사업)**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지원사업					
<b>1. 사업개요</b>	사업명				
	사업구분 ※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input type="checkbox"/> ESG 관련 사업 <input type="checkbox"/> 건물 매입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신증축			
	사업 추진단계				
	시설 사용				
	사업기간	【        】 ~ 【        】			
	사업예산	총 【        】 백만원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구분	자체자금 법인회계	차입금 외부차입금	기타 기부금
		조달금액			
	지역				
	사업 위치				
	건축연면적				
	추진경과 및 일정				
사업계획의 구체성	<input type="checkbox"/> 연차별 계획 <input type="checkbox"/> 자금소요 계획 <input type="checkbox"/> 사업예산 반영 <input type="checkbox"/> 실행 추진조직 구성 <input type="checkbox"/> 사업 추진 완료 ※ 모든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b>2. 사업계획 (투자효과)</b>	<b>① 예상 수입 : 총 【        】 백만원 (10년간)</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연도	수입	비고		
	2025				
	:				
	2034				
계					
※ 수입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 예상되는 총 수입(비용 제외 전)으로 기재					
<b>② 연도별 투자액</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2024년 말까지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b>③-1. 건물 용도(ESG 관련 사업의 경우 미작성)</b>					
구분	면적(m <sup>2</sup> )	비고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임대업				
<input type="checkbox"/>	교육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체육문화 관련 사업				
<input type="checkbox"/>	병원 관련 사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항				
<b>③-2. 토지 매입 규모</b>					
매입 전 면적(A, m <sup>2</sup> )	매입 후 면적(B, m <sup>2</sup> )	매입 면적(B-A, m <sup>2</sup> )			

<b>3. 심사반영 입력항목</b>	<input type="checkbox"/>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교(5점)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5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1차 -10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2차 -1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30일 이상 연체(-5점)
<b>4. 기타사항</b>	용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 착수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상 착수 <input type="checkbox"/> 일정 변경 <input type="checkbox"/> 포기

## ※ 세부 작성방법

### 1. 사업 개요

- **(사업명)** KASFO용자시스템 '용자신청서' 상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신청사업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명을 작성
- **(사업구분)** ESG 관련 사업, 건물 매입, (시설물)개·보수 및 신·증축 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에  표기
- **(사업 추진단계)** 신청일 현재 사업의 추진단계를 기재
  - ESG 관련 설비 도입 사업은 계약체결에서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
  - 건물 매입 사업의 경우 "계획구상", "계획수립", "계약체결", "등기 완료" 중 해당 사항 기재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 "계획구상", "계획수립", "계획추진", "설계추진", "설계완료", "건축허가", "공사계약", "공사진행", "준공" 중 해당 사항 기재
  - 선택된 사업의 추진단계는 첨부자료로 확인이 되어야 인정되므로 KASFO용자시스템 용자신청 [사업계획서] 입력탭 하단 [추진단계별 증빙문서]에 반드시 해당 증빙자료 첨부

**<KASFO용자시스템 사업 추진단계별 증빙자료 첨부화면>**

용자신청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담당자인사말		첨부파일	
사업선택								계장	
1	계약방법제출 증빙자료	계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Q	다운로드	삭제			
2	공통 첨부자료	이사회 회의록		Q	다운로드	삭제			
3	공통 첨부자료	자체사업계획서		Q	다운로드	삭제			
4	기자재사업	구매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5	기자재사업	구매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6	기자재사업	품명명세서		Q	다운로드	삭제			
7	기자재사업	자산등록명세서(대장)		Q	다운로드	삭제			
8	시설사업	건축허가서		Q	다운로드	삭제			
9	시설사업	공사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10	시설사업	설계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11	시설사업	설계도면		Q	다운로드	삭제			
12	시설사업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준공필증		Q	다운로드	삭제			
13	시설사업	착공신고서(필증)		Q	다운로드	삭제			
14	이전사업	권할형 이전승인서		Q	다운로드	삭제			
15	토지구매	등기부등본		Q	다운로드	삭제			
16	토지구매	매매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17	토지구매	지적도		Q	다운로드	삭제			
18	토지구매	토지대장 또는 임대대장		Q	다운로드	삭제			

☞ **공통 첨부자료** : 「자체사업계획서(필수)」, 이사회 개최 된 경우 「이사회 회의록(선택)」

☞ **ESG 관련 설비 도입** : 「물품명세서」, 「건축허가서」, 「계약서」, 「자산등록명세서(대장)」 등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

☞ **건물 매입** : 「매매계약서」 등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설계도면」, 「착공신고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준공필증」 등

ex) 계약체결과 관련된 내부결재문서, 입찰공고 캡처화면 등

※ 공사계약서의 경우 설계, 감리, 건축계약서 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계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는 첨부한 모든 계약서 계약금의 합과 동일해야 하며, 사업 추진단계 중 계약이 미체결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정 금액으로 사업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ex) 설계용역 계약체결 완료(5억원), 건설공사용역 계약 미체결(100억원)인 경우 사업비는 105억원으로 작성하고 설계용역 계약서를 첨부함

※ 계약서가 여러 업체로 나뉘어져 계약된 경우, 별도로 계약현황 요약표를 만들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납품일)

- **(시설 사용)** 수익용기본재산이 시설물(건물)인 경우 해당 시설의 주사용 용도(임대, 수익사업체 운영 등)를 기재
- **(사업기간)** 신청사업의 사업기간을 기재
  - ESG 관련 설비 도입 사업은 계약체결에서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
  - 건물 매입 사업은 계약체결에서 등기완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
  -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기간을 기재
- **(사업예산)** 총 사업비를 기재하며, 자체자금 및 차입금 조달액을 기재
- **(지역)** 사업위치 지역명을 기재
- **(사업위치)** 공사 추진 지역 주소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해당 건물의 주소를 기재
- **(추진 경과 및 일정)** 신청사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정을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건축설계, 건축허가, 건축계약, 착공, 완공까지 경과 및 일정을 기재
  -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사업의 경우 자체계획수립, 계약체결, 공사완료 경과 및 일정을 기재
- **(사업계획의 구체성)** 연차별 계획, 자금소요 계획, 사업예산 반영, 실행 추진조직 구성, 사업추진 완료 중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표기

ex) 사업개요 입력예시

<b>1. 사업개요</b>	사업명	수익용건을 매입			
	사업구분 ※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input type="checkbox"/> ESG 관련 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물 매입 <input type="checkbox"/> 개보수 <input type="checkbox"/> 신증축			
	사업 추진단계	계획추진			
	시설 사용	임대			
	사업기간	【 2025.1 】 ~ 【 2025.10 】			
	사업예산	총 【 15,000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체자금 법인회계	차입금 외부차입금	기타 기부금
		조달금액	10,000	5,000	-
	지역	대구			
	사업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건축연면적	480m <sup>2</sup>				
추진경과 및 일정	수익용건을 매입 계획 이사회 의결(2024.9)				
사업계획의 구체성	<input type="checkbox"/> 연차별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금소요 계획 <input type="checkbox"/> 사업예산 반영 <input type="checkbox"/> 실행 추진조직 구성 <input type="checkbox"/> 사업 추진 완료 ※ 모든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				

## 2. 사업계획(투자효과)

- **(예상 수입)** 사업 추진에 따른 10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을 기재
- **(연도별 투자액)**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연도별 사업비를 입력



○ **(건물 용도)** 건물 활용용도 항목을  표기하며, 비교란에 관련 업종 기재

-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확충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 도서관, 학원 등을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 **“교육 서비스업”**
- 체험학습장, 휘트니스센터 등 체육문화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 **“체육문화 관련 사업”**
- 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 **“병원 관련 사업”**
- 그 외 사업의 경우 **“기타 사항”**

○ **(토지매입 규모)** 토지매입이 포함되는 사업에 한하여 작성하며, 토지 매입 규모를 기재

### 3. 심사반영 입력항목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기

가산점 항목	감점 항목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대학(전문)혁신지원사업 선정교의 사업 : 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대학 및 전문대학 : 5점(2023회계연도 기준)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 : 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30일 이상 연체실적 학교(법인) : 5점 <input type="checkbox"/>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위반 : 10점</li> <li>• 2차 위반 : 15점</li> </ul> <p>※ 다만, 「용자사업규정」 제16조(용자 배제 및 제한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및 동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해당되어 용자배제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의 이전 임원이나 이전 학교의 장의 부정·비리 및 관리·부실로 인한 1차 위반처분과 2차 위반처분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미표기</p>

### 4. 기타사항

○ 용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대로 착수 가능 여부를 “정상 착수”, “일정 변경”, “(사업)포기” 중 선택

**(서식) ②-7. 사업 계획서(운영비 지원사업)**

<b>운영비 지원사업 계획서</b>						
<b>1. 사업개요</b>	사업명					
	용자구분 <small>※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small>	<input type="checkbox"/> 일반 용자 <input type="checkbox"/>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사업구분 <small>※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small>	<input type="checkbox"/> 법인 운영비 지원사업(상환재원 법인회계) <input type="checkbox"/>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상환재원 학교회계) <input type="checkbox"/> 부속병원 운영비 지원사업(상환재원 병원회계)				
	운영비 사용 용도					
	총 운영비(백만원)					
	운영비 용자금 사용기간	【           】 ~ 【           】				
	추진경과 및 일정					
<b>2. 운영비 지출내역</b>	(단위 : 천원)					
	항목	운영비 지출(예정)내역				
		운영비 사용항목	총 지급(예정) 금액	용자금액 (용자비율)	지급(예정) 일자	비고 (사용내역)
	1	소송비용	100,000	50,000 (50%)	'24.3월 예정	○○소송 관련 비용
	2	명예퇴직금	200,000	200,000 (100%)	'24.7월 예정	교원 ○명 명예퇴직금
	3	세금 납부	500,000	500,000 (100%)	'24.2월 예정	재산세 ○○○원 납부
	4	교직원 인건비	100,000	100,000 (100%)	'24. 3월 예정	교직원 ○명 인건비 지급
계						
※ 총 지급(예정)금액은 용자신청한 운영자금 항목의 총 집행액, 용자금액은 총 집행액 중 용자금으로 사용할 부분과 총 지급액 중 용자비율을 ( )안에 기재합니다. ※ 지급(예정)일자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집행(예정)일과 지출(예정)액을 기재합니다. ※ 각 운영비 항목들은 사업계획서(집행의 근거)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b>3. 심사반영 입력항목</b>	<input type="checkbox"/>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교(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5점)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30일 이상 연체(-5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1차 -10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2차 -15점)						
<b>4. 기타사항</b>	용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 착수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상 착수	
					<input type="checkbox"/> 일정 변경 <input type="checkbox"/> 포기	

## ※ 세부 작성방법

### 1. 사업 개요

- **(사업명)** KASFO용자시스템 '용자신청서' 상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신청사업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명을 작성
- **(용자구분)** 신청사업의 추진 주체에 따라 "일반 용자"와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표기
  - ※ 용자신청서 상의 [용자구분]과 동일한 항목에 표기
- **(사업구분)** 운영비로 지출되는 해당회계(상환재원)에  표기
- **(운영비 사용 용도)** 운영비 용자금의 용도(명예퇴직금, 제세공과금, 소송비용, 교직원 인건비 등)를 세부적으로 기재
  - 용자금(운영비)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KASFO용자시스템 용자 신청 [첨부파일] 입력탭 하단 [추진단계별 증빙문서]의 "기타"에 첨부

**<KASFO용자시스템 사업 추진단계별 증빙자료 첨부화면>**

용자신청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담당자인증사항
첨부파일

사업선택
사업1: (교육지원사업(대학)) - 사회과학관 신설
저장
초기화

● 첨부파일정보

구분	첨부파일명세	첨부파일 양식	첨부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및 삭제
추진단계별 증빙문서	기자재사업	물품명세서		Q 다운로드 삭제
		자산총량명세서(대장)		Q 다운로드 삭제
	시설사업	건축허가서		Q 다운로드 삭제
		공사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설계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설계도면		Q 다운로드 삭제
이전사업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준공필증		Q 다운로드 삭제	
	확공신고서(필종)		Q 다운로드 삭제	
토지구매	관할청 이관승인서		Q 다운로드 삭제	
	등기부등본		Q 다운로드 삭제	
	매매계약서		Q 다운로드 삭제	
	지적도		Q 다운로드 삭제	
기타	명예퇴직금 또는 인건비증		Q 다운로드 삭제	

\* 목록의 첨부파일은 [기타]항목에 압축파일로 첨부

- ☞ **명예퇴직금** : 명예퇴직금 관련 내부 규정, 대상인원 및 명예퇴직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 문서
  - ☞ **인건비** : 인건비 관련 내부 규정, 인건비 지급 인원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 문서
  - ☞ **소송비용** : 소송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법무법인과의 계약서 등
  - ☞ **제세공과금** : 세금납부 고지서 등
  - ☞ **기타** : 운영비 사용 목적과 금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 ※ 첨부한 모든 증빙자료는 운영비 용자신청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총 운영비)** 용자를 신청하신 운영비의 총 금액을 기재
  - ex) 제세공과금 10억원, 교직원인건비 40억원 신청 시 총 50억원 작성

- (운영비 용자금 사용기간) 용자 신청액의 사용 예정기간을 기재
- (추진 경과 및 일정) 운영비 용자금의 집행 일정을 시작부터 마지막 일정까지 기재

## 2. 운영비 지출(예정) 내역

- (운영비 사용항목) 운영비 용자금 사용 용도를 세부 항목별로 기재  
ex) 소송비용, 제세공과금, 교직원 인건비 등
- (총 지급(예정)금액) 해당 목적의 총 운영비 지급(예정) 금액을 기재
- (용자금액) 총 운영비 중 사학진흥기금 용자금액과 비율을 기재
- (비고) 구체적인 운영비 사용내역을 기재

## 3. 심사반영 입력항목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기

가산점 항목	감점 항목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대학(전문)혁신지원사업 선정교의 사업 : 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대학 및 전문대학 : 5점(2023회계연도 기준)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 : 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30일 이상 연체실적 학교(법인) : 5점 <input type="checkbox"/>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위반 : 10점</li> <li>• 2차 위반 : 15점</li> </ul> <p>※ 다만, 「용자사업규정」 제16조(용자 배제 및 제한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 선임) 및 동법 제25조의3(임시이사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해당되어 용자배제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의 이전 임원이나 이전 학교의 장의 부정·비리 및 관리·부실로 인한 1차 위반처분과 2차 위반처분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미표기</p>

## 4. 기타사항

- 용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대로 착수 가능 여부를 "정상 착수", "일정 변경", "(사업)포기" 중 선택

**(서식) ②-8. 사업 계획서(대환대출사업)**

<b>대환대출사업 계획서</b>						
1. 사업개요	사업명					
	용자구분 <small>※ 해당 항목에 ☑ 표시</small>	<input type="checkbox"/> 일반 용자 <input type="checkbox"/>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 용자				
	사업구분 <small>※ 해당 항목에 ☑ 표시</small>	<input type="checkbox"/> 미래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 안전강화 지원 사업 <input type="checkbox"/> 교육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교육특화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업 <input type="checkbox"/>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운영비 지원사업				
	사업 추진단계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진행 중				
	시설 구분선택	<input type="checkbox"/> 교육용기본재산 <input type="checkbox"/> 수익용기본재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기간	【            】 ~ 【            】				
	사업예산	총 사업비 : 【            】 백만원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구분	자체자금		차입금	기타
	학교회계	법인회계	병원회계	외부차입금 등	국고보조금, 기타 등	
	조달금액					
차입 현황	대환대상 금융기관 : 00은행 대환대상 용자일 : 0000.00.00 차입금 잔액 : 【            】 백만원 대환대상 차입금리 : % (00년 0월 기준) 대환대상 잔여 상환기간 : 0년 거치 0년 상환					
추진경과 및 일정						
2. 사업계획 (투자효과)	<b>① 시설 및 기자재 이용자 : 총 【            】 명</b> <small>(※ 기숙사 사업의 경우 학과는 '기숙사 구분(기숙사 **동)' 으로, 비교에는 기숙사 실수 (총 **실, *인 *실) 기재 요망)</small>					
	학 과	수혜자수(명)	비 고			
	계					
<b>②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증가정도</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m<sup>2</sup>(연면적), 개수, %)</span>						
구분	신청사업 전 면적/수량(A)	신청사업 후 면적/수량(B)	증 가 정 도			
			증 감(C=B-A)	비 율(C/A)		
토 지						
건 물						
기 자 재						
계						
<b>③ 연도별 투자액</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백만원)</span>						
2024년 말까지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계		

<b>2. 사업계획 (투자효과)</b>	<b>④-1. 건물 용도</b>		
	구분	면적(㎡)	용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3. 이자비용 절감분 활용방안</b>	<b>④-2. 토지 용도</b> (※ 토지매입 관련 사업만 작성)		
	면적(㎡)	용도	
<b>4. 심사반영 입력항목</b>	<b>④-3. 기자재 용도</b> (※ 기자재 관련사업만 작성)		
	학과명	품목	수량
<b>5. 기타사항</b>	<b>이자비용 절감액</b>		<b>총 【        】 백만원</b>
	<b>이자비용 절감분 활용방안 :</b>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 절감액	활용방안
2025			
:			
2034			
2035			
계			
※ 이자 절감분을 활용한 교육투자계획 등을 작성 예) 기숙사 건축 등 자금에 대한 대환대출 용자지원 의 경우 대환대출에 의한 이자비용 절감분을 재원으로 기숙사비 인하 등 학생 교육투자로 환원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용자 신청 시 제출			
<input type="checkbox"/>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교(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5점)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30일 이상 연체(-5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1차 -10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2차 -15점)			
용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 착수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정상 착수 <input type="checkbox"/> 일정 변경 <input type="checkbox"/> 포기	

## ※ 세부 작성방법

### 1. 사업개요

- **(사업명)** KASFO용자시스템 '용자신청서' 상의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신청사업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명을 작성
- **(용자구분)** 신청사업의 추진 주체에 따라 "일반 용자"와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표기
  - ※ 용자신청서 상의 [용자구분]과 동일한 항목에 표기
- **(사업구분)** 외부 차입금이 사용된 대한대출 대상 사업이 해당하는 사업구분에  표기
- **(사업 추진단계)** 신청일 현재 대한대출 대상 사업의 추진단계를 "완료" 또는 "진행중"으로 구분하여 해당 항목에  표기
  - 선택된 사업의 추진단계는 첨부자료로 확인이 되어야 인정되므로 KASFO용자시스템 용자신청 [사업계획서] 입력탭 하단 [추진단계별 증빙문서]에 반드시 해당 증빙자료 첨부

**<KASFO용자시스템 사업 추진단계별 증빙자료 첨부화면>**

번호	증빙자료명	필수/선택		
1	계약방법제결 증빙자료	계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중표도	삭제
2	공통 첨부자료	이사회 회의록	다중표도	삭제
3	공통 첨부자료	자체사업계획서	다중표도	삭제
4	기자재사업	구매계약서	다중표도	삭제
5	기자재사업	구매계약서	다중표도	삭제
6	기자재사업	물품명세서	다중표도	삭제
7	기자재사업	자산등록명세서(대장)	다중표도	삭제
8	시설사업	건축허가서	다중표도	삭제
9	시설사업	공사계약서	다중표도	삭제
10	시설사업	설계계약서	다중표도	삭제
11	시설사업	설계도면	다중표도	삭제
12	시설사업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준공필증	다중표도	삭제
13	시설사업	착공신고서(필용)	다중표도	삭제
14	이전사업	관할청 이전승인서	다중표도	삭제
15	토지구획	통기부등본	다중표도	삭제
16	토지구획	여야계약서	다중표도	삭제
17	토지구획	지적도	다중표도	삭제
18	토지구획	토지대장 또는 입야대장	다중표도	삭제

☞ **공통 첨부자료** : 「자체사업계획서(필수)」, 이사회 개최 된 경우 「이사회 회의록(선택)」

☞ **시 설 사 업** :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설계도면」, 「착공신고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준공필증」

ex) 계약체결과 관련된 내부결재문서, 입찰공고 캡처화면 등

☞ **기자재(물품 구입), IT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사업** : 「물품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자산등록명세서(대장)」,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공사계약서의 경우 설계, 감리, 건축계약서 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계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는 첨부한 모든 계약서 계약금의 합과 동일해야 하며, 사업 추진단계 중 계약이 미체결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정 금액으로 사업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ex) 설계용역 계약체결 완료(5억원), 건설공사용역 계약 미체결(100억원)인 경우 사업비는 105억원으로 작성하고 설계용역 계약서를 첨부함

※ 계약서가 여러 업체로 나뉘어져 계약된 경우, 별도로 계약현황 요약표를 만들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납품일)

- **(시설 구분선택)** 시설 구분에 따라 대환대출 대상 사업의 해당 항목에  표기
  - 교육용기본재산 확충 관련 사업인 경우 "교육용기본재산"
  -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관련 사업인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 기자재 구입, IT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사업 등의 경우 "기타"
- **(사업기간)** 대환대출 대상 사업의 사업기간을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착공부터 완공까지의 기간
  - 시설매입 사업의 경우 계약체결에서 등기완료일 까지의 기간을 기재
  -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사업의 경우 계약체결에서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재
  - 그 밖의 구입, 개발 등의 사업은 계약체결에서 납품완료 까지의 기간을 기재
- **(사업예산)** 대환대출 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를 기재하며, 진행 중인 경우 예상 사업비를 기재하고 자체자금 및 차입금 조달금액을 기재
- **(차입 현황)** 대환대출 대상 사업의 차입 현황을 기재

※ 작성 예시

기재항목	입력 예시
대환대상 금융기관	OO은행
대환대상 용자일	2023.5.3
차입금 잔액	1,000백만원
대환대상 차입금리	4.71%(신청일 기준 금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기입)
대환대상 잔여 상환기간	3년거치 0년 상환

- **(추진 경과 및 일정)** 대환대출 대상 사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정을 기재
  - 시설사업의 경우 건축설계, 건축허가, 건축계약, 착공, 완공까지 경과 및 일정을 기재
  - 기자재 구입, IT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사업 등의 경우 자체계획 수립, 계약체결, 공사(납품)완료 경과 및 일정을 기재

## 2. 사업계획(투자효과)

- **(이자비용 절감분 활용방안)**
  - 수혜자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 수 합을 기재(정원 외 포함)
  - IT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하여 학생수를 기재
-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증가정도)** 해당 신청사업의 기존 면적(수량)과 사업이 완공된 후 면적(수량)을 기재
  - 신청 사업 후의 면적 또는 수량은 사업개요의 건축 연면적 또는 수량과 일치하도록 기재
  - 전 면적과 후 면적에 교사 전체 면적을 적지 않도록 하며, 해당 대환대출 대상 사업의 면적만 기재
  - 기자재 신청 전 수량과 구입 후 수량을 기재
  - IT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연도별 투자액)**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연도별 사업비를 기재
- **(건물, 토지 용도)** 건물 및 토지 면적에 따른 사용 용도를 기재
  - 건물 및 토지별 사용 용도에 따른 면적을 기재
  - 기자재 구입 및 IT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사업 등의 경우 미기재
  -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에 따른 대환대출의 경우 용도에 아래 사항 중 해당 항목을 기재

-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확충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 도서관, 학원 등을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 **“교육 서비스업”**
- 체험학습장, 휘트니스센터 등 체육문화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 **“체육문화 관련 사업”**
- 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 **“병원 관련 사업”**
- 그 외 사업의 경우 **“기타 사항”** 으로 작성

- **(토지 용도)** 토지매입 및 이전사업 관련 사업만 작성하며, 토지의 면적과 사용 용도를 기재
- **(기자재 용도)** 기자재 관련 사업만 작성하며, 기자재를 활용하는 학과 및 품목, 수량, 용도를 기재

### 3. 이자비용 절감분 활용방안

- **(이자비용 절감액)**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기간 중 예상되는 이자 절감액 총액을 기재
- **(이자비용 절감분 활용방안)** 대환대출을 통한 연도별 이자 절감액의 활용방안(교육 재투자 계획 등)을 기재

### 4. 심사반영 입력항목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표기

가산점 항목	감점 항목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대학(전문)혁신지원사업 선정교의 사업 : 5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대학 및 전문대학 : 5점(2023회계연도 기준) <input type="checkbox"/>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 : 5점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30일 이상 연체실적 학교(법인) : 5점 <input type="checkbox"/> 심사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위반 : 10점</li> <li>• 2차 위반 : 15점</li> </ul> <p>※ 다만, 「융자사업규정」 제16조(융자 배제 및 제한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 선임) 및 동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해당되어 융자배제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의 이전 임원이나 이전 학교의 장의 부정·비리 및 관리부실로 인한 1차 위반처분과 2차 위반처분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미표기</p>

### 5. 기타사항

- 융자 배정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사업계획대로 착수 가능 여부를 “정상 착수”, “일정 변경”, “(사업)포기” 중 선택

**(서식) ③ 부채현황 작성**

부채 현황										
차입금 내역										
기준일자: 용자신청일										(단위: 천원)
【 법인회계 】 【 학교회계 】 【 병원회계 】										
상환 재원	차입처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 주기	연이율	차입 원금	기상환액	'23회계 연도 결산잔액 (A)	결산이후 증감액 (B)	신청일 기준 잔액(C)
법인 회계			년 거치 년 상환		%					
	계									
학교 회계			년 거치 년 상환		%					
	계									
병원 회계			년 거치 년 상환		%					
	계									
<b>합 계</b>										
※ A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2024년 2월 28일)으로 작성 ※ B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신청일 까지 차입금 변동분 작성 신규 차입분은 0,000 / 상환분은 -0,000으로 변동분 천원 단위로 기재 ※ C는 용자신청일 기준의 차입금 잔액을 작성 ※ 상환회계가 학교인 경우 법인 및 학교 회계 기재, 병원인 경우 법인 및 병원회계 기재										

**(서식) ④ 연도별 차입금 상환계획서**

**연도별 차입금 상환계획서**  
 (  법인회계 /  학교회계 /  병원회계 )

(기준일자 : 용자 신청일)

(단위 : 천원)

상환연도	상환(예정)원금	상환(예정)이자	상환원리금 합계	비 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2038년				
2039년				
2040년				
2041년				
2042년				
2043년				
2044년				
합계				

- ※ 상환계획서는 상환회계별로 작성하여야 함
- ※ 상환(예정)원금의 합계는 <서식3> 부채현황의 신청일 기준의 잔액(C)과 일치해야 함
- ※ 상환(예정)이자 금리는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 ※ 대환대출사업의 경우, '용자원리금 분할 상환 예정표' 작성하여 제출
- ※ 상환계획서 작성 시 원리금 계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자금 용자사업 내 '용자 원리금 상환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원리금을 산출할 수 있음

**(서식) ⑤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최근 2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사 업 명					
대 학 명					
확인서 작성 대상 기간	2000년 0월 0일 ~ 2000년 0월 0일				
부정비리 유무*	구 분	감사처분**	행정처분 ***	형사판결****	
	유/무	유/무	유/무	확정 전	확정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p>*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의 임원이 당해 학교나 학교법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에 개입되었거나,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 및 감사·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p> <p>** 감사원·교육부 등의 기관에서 중징계 이상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p> <p>***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중등이하교의 경우 관련법령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p> <p>**** 부정·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 '확정 전'란에 기재하고, 부정·비리 관련 혐의로 형사처벌(금고 이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항고 또는 상고·재항고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전'란에 기재</p> <p>※ 중등이하교가 용자 신청한 경우 교육청 등 관할기관의 감사·행정처분에 해당함</p>					
<p><b>2000년 0월 0일</b></p>					
<p>본인은 『000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2000년 0월 0일부터 2000년 0월 0일까지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필요시, 세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p> <p>상기 확인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누락된 내용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p>[붙임] 사학진흥기금 용자사업 부정비리 사항 확인 내역 1부.</p>					
<p>00대학교 총장 (00병원 병원장)</p>				<p>○ ○ ○ (인)</p>	
<p><b>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귀하</b></p>					

[붙임] 사학진흥기금 용자사업 부정비리 사항 확인 내역(해당사항 있는 경우 작성)

구분	연번	공문 제목	문서 번호	시행 일자	대상	내용	비고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중징계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1	00000 000000	00-123	2024.6.2	총장	해임	교육부
	2						감사원
	3						
	4						
	5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에 의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1	00000 000000			-	정원 감축	1회
	2						
	3						
	: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 (금고형 이상)	1	사건명	사건번호	2024.8.7	총장	징역 1년	확정 전 (1심)
	2				이사장	-	확정 전 (수사 중)
	3						
	:						

**【작성방법】**

1) 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부정·비리 주체 및 유형, 정도에 대한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부정·비리주체) 학교의 장·학교법인의 임원 등 기관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개입되어 있고,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주요 보직자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
- (부정·비리유형) 법인회계,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시·학사, 연구비·산단, 기자재·시설 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부정·비리가 해당
- (부정·비리정도) 감사처분의 경우 ‘중징계’이상, 행정처분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형사판결의 경우 ‘금고형’이상

2) 제출한 내용의 허위, 누락 등 사실과 다른 경우 심의를 거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제출된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관련 공문 등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제출 이후부터 최종 선정 이전까지의 기간 중 부정비리 사안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대학은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식) ⑥ 회계별 미지급(비용)금 변동 현황**

<b>회계별 미지급(비용)금 변동 현황</b>					
(단위 : 천원)					
회계 구분	미지급 내역	'23회계연도 결산상 금액(A)	신청일 기준 지급 총액(B)	미지급 잔액 (A-B)	미지급 잔액 존재 사유
법인회계					
교비회계 (등록금)					
교비회계 (비등록금)					
부속병원 회계					
<b>합계</b>					

**(서식) ⑦ 학교법인 임원 변동현황**(관할청이 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인 경우에 한함)

학교법인 임원 변동현황			
구분	취임기간	이사현황	비고
정이사	00.00.00~00.00.00	(8명) 김00, 한00, 이00, 송00, 권00, 오00, 전00, 이00	
정이사	00.00.00~00.00.00	(9명) 김00, 한00, 이00, 송00, 권00, 오00, 전00, 이00, 윤00	
정이사	00.00.00~00.00.00	(8명) 김00, 한00, 이00, 송00, 권00, 오00, 전00, 이00	자격상실*
이사부존재	00.00.00~00.00.00	-	
임시이사	00.00.00~00.00.00	(8명) 김00, 한00, 이00, 송00, 권00, 오00, 전00, 이00	임시이사**
임시이사	00.00.00~00.00.00	(9명) 김00, 한00, 이00, 송00, 권00, 오00, 전00, 이00, 윤00	
이사부존재	00.00.00~00.00.00	-	
정이사	00.00.00~00.00.00	(9명) 김00, 한00, 이00, 송00, 권00, 오00, 전00, 이00, 윤00	정상화***
* 관련 교육부 행정제재 확정 통지 공문 증빙제출 ** 임시이사의 선임 관련 관할청 승인 공문 증빙제출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관련 관할청 승인 공문 증빙제출			
상기 사항에 대한 세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으며, 허위사실이나 누락된 내용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b>2000. 00. 00</b>			
<b>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      0 0 0 (인)</b>			

**【작성대상】**

신청일 기준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라 관할청이 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및 제출





# FAQ

IV



# FAQ

## 1 용자신청 관련 질문/답변

**Q1 : 한 학교에서 교육지원 사업과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 사업 등 두 개 이상 용자 신청하는 경우 용자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A1 :** 두 가지 이상 사업을 신청할 시 당해연도 용자지원은 개별 학교 기준이 아닌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신청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250억원을 한도로 지원 가능합니다. 단, '25학년도 정원증원 의대(부속병원)의 용자지원액은 당해연도 한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Q2 : 용자지원 한도 및 용자심사를 본교와 분교를 분리하여 각각 적용하나요?**

**A2 :** 본교와 분교(제2캠퍼스)를 한 학교로 보아 용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자심사 시에도 학교재정 심사항목들은 본교와 합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Q3 : 용자신청 시 관할청의 기채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3 :** 용자신청 단계에서 기채허가는 필요 없으며, 용자배정 이후 용자금 청구 시 관할청의 기채허가 또는 기채신고 수리(담보대상교의 경우 담보제공 허가 포함)를 받아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4 : 학교 이전사업의 경우 용자신청 시 사전에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4 :** 학교 이전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청의 인·허가를 득하고 용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관할 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① 학교이전으로 위치변경(이전) 계획에 대한 승인 → ② 이전(등기완료) → ③ 위치변경(이전) 인가 신청 → ④ 위치변경(이전) 인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할 외 타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학교 폐지 및 신설로 현재 소재지의 관할청에서 학교 폐지에 대한 인가를 받고, 이전예정 소재지의 관할청에서 학교 신설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수도권으로 이전사업은 제한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5 : 대환대출사업의 경우 외부 차입금은 모두 대상이 되는지요?**

A5 : 외부 차입금의 용도가 교육환경개선 자금 용자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첨부서류로 관할청 기채허가서(리스 대환 시 제외), 대출약정서, 차입확인서(대출잔액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환대출 시 부속병원의 리스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리스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차입이 가능합니다.

**Q6 : 융자금을 배정받은 이후 배정금액 전액을 한번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6 : 배정받은 융자금은 일부 또는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는 배정액이 30억원 이상 연 2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지급 받은 융자금은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 완료 시(예시 : 준공 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7 : 융자금을 배정받은 후 즉시 자금을 집행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 융자금의 사용 시기는 용자사업 지원계획의 사립학교 통지일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로 긴급한 자금은 교비에서 선 지출하고 융자금을 받은 이후 대체 처리하면 됩니다.

**Q8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차입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회계처리를 비등록금회계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융자신청 후 융자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차입할 경우, 그 융자금 차입 및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8 : 비등록금회계에서만 차입금을 세입 조치함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를 상환재원으로 하는 차입은 교육시설 신·증축, 교육용 집기비품 구입 등 학교 교육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출금' 계정(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을 통해 차입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 단, 기채허가 중 상환재원이 '교비회계'인 경우만 전출 가능

**Q1 : 용자 신청을 위한 KASFO 용자시스템 사용자 등록(신규)은 어떻게 하나요?**

**A1 :** 최초 용자 신청하는 학교법인 담당자의 경우 교육재정지원부 담당자 확인을 거쳐 ID를 생성하고 있음에 따라, 최초 신청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담당자 (☎053-770-2522~5)에게 연락 바랍니다.

- ※ 기존 사용자의 경우, 등록된 아이디와 비번 사용
- ※ 법인 담당자가 법인 및 학교(병원) 담당자 ID 생성 가능

**Q2 : 용자 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A2 :** 용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학교 사용자가 [용자신청] 메뉴에서 용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용자신청 처리조회] 메뉴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한 후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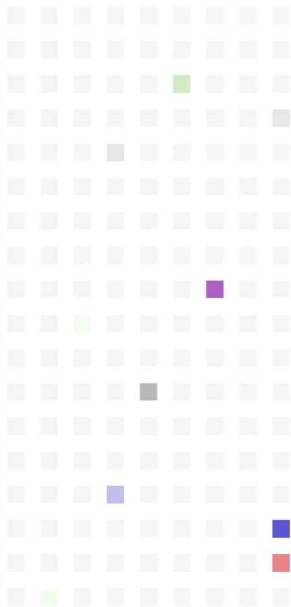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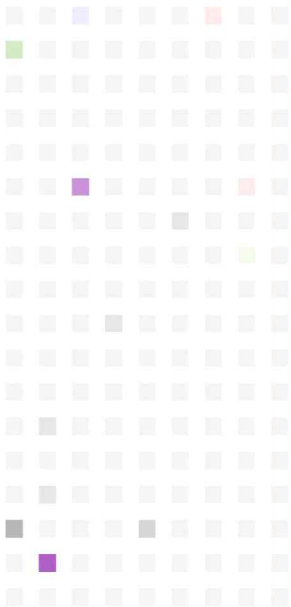
- ※ 법인/학교/병원 구분 없이 용자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능

**Q3 : KASFO 용자시스템에서 용자 신청 완료 후 제출만 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것인가요?**

**A3 :** 시스템에서 모두 입력하고 제출 완료하였더라도 반드시 신청서(대학 : 서식 1-1, 중등이하 : 서식1-2) 인쇄하여 법인 이사장, 학교 총장(병원장) 날인 후 부정·비리 확인서(서식5), 학교법인 임원 변동현황(서식7)과 함께 전자공문(스캔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문서들은 시스템으로 제출하며 공문으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서식 7번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만 제출





# 2025년도 용자사업 심사표

별첨





■ 대학(교비회계)

용자심사표

< 대학(교비회계) >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전공대학

구분		배점기준			
상관능력평가표 (100점)	1 학생등록률추세 (20점, △)	[학교](학부) 정원내 입학자 + 정원내 모집정원			
		$\{ \text{Min}(\{(2023\text{년도 신입생총원율} \times 3 + 2022\text{년도 신입생총원율} \times 2 + 2021\text{년도 신입생총원율} \times 1) \div 6, 100\% \}) \div 100\% \} \times 10\text{점}$			
		[학교](학부) 정원내 재학생 + (학생정원 - 학생모집정지인원)			
		$\{ \text{Min}(\{(2023\text{년도 재학생총원율} \times 3 + 2022\text{년도 재학생총원율} \times 2 + 2021\text{년도 재학생총원율} \times 1) \div 6, 100\% \}) \div 100\% \} \times 10\text{점}$			
	2 등록금의존율 (10점, ▼)	[학교](자금계산서) 등록금 수입(단기수강료제외) + 운영수입			
		상위 75% 초과 (10점)	상위 75% 이내 (7점)	상위 50% 이내 (4점)	상위 25% 이내 (1점)
	3 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①+② 20점, △)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①)(10점)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②)(10점)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4 기본재산규모 (10점, △)	[법인+학교+병원]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토지, 건물) + 병원재산 장부가액(토지, 건물) +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건물 가액 : 평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5 적립금 규모 (10점, △)	[법인+학교]적립금 총액 + 이월금 총액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6 차입금의존율 (10점, ▼)	[법인+학교]차입금 + 기본금				
	상위 75% 초과 (10점)	상위 75% 이내 (7점)	상위 50% 이내 (4점)	상위 25% 이내 (1점)	
7 운영이익 (20점, △)	[학교](자금계산서) 최근 3년 운영수입 평균 - 최근 3년 운영지출 평균				
	상위 25% 이내 (20점)	상위 50% 이내 (15점)	상위 75% 이내 (10점)	상위 75% 초과 (5점)	
강령(30점)	① 3년간 30일 이상 연계 실적 학교(법인)	② 2년 이내 1차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③ 2년 이내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5 점	-10 점	-15 점		
가산점(15점)	①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교	② 법령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대학 및 전문대학	③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		
	5 점	5 점	5 점		
총 계	7개 항목 100점 만점				

## ■ 대학(법인회계)

### 용자심사표

< 대학(법인회계) >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전공대학

구분	배점기준				
상관능력평가 지표 (100점)	1 수입대비지출비율 (10점, ▼)	[법인](자금계산서) 운영지출 + 운영수입			
		상위 75% 초과	상위 7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25% 이내
		(10점)	(7점)	(4점)	(1점)
	2 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①+② 20점, △)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①)(10점)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10점)	(7점)	(4점)	(1점)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②)(10점)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10점)	(7점)	(4점)	(1점)
	3 운영차액규모 (10점, △)	[법인] 운영수입 - 운영지출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4 기본재산규모 (20점, △)	[법인+학교+병원]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토지, 건물) + 병원재산 장부가액(토지, 건물) +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건물 가액 : 평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5 적립금 규모 (10점, △)	[법인]적립금 총액 + 이월금 총액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6 차입금의존율 (10점, ▼)	[법인+학교]차입금 + 기본금				
	상위 75% 초과	상위 7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25% 이내	
7. 운영이익 (20점, △)	[법인](자금계산서) 최근 3년 운영수입 평균 - 최근 3년 운영지출 평균				
	상위 25%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75% 이내	상위 75% 초과	
감점(30점)	① 3년간 30일 이상 연차 실적 학교 (법인)	② 2년 이내 1차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③ 2년 이내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5 점	-10 점	-15 점		
가산점(15점)	①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교	②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대학 및 전문대학	③ 기숙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숙사		
	5 점	5 점	5 점		
총 계	7개 항목 100점 만점				

# 대학(부속병원회계)

## 용자심사표

( 대학(부속병원회계) )

대학

구분		배점기준			
상 관 능 력 평 가 지 표 ( 1 0 0 점 )	1 영업이익률 (10점, △)	[병원](손익계산서) 의료이익 + (자금계산서)의료수입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2 유통비율 (10점, △)	[병원](대차대조표) 유동자산 + 유동부채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3 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①+② 20점, △)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①)(10점)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②)(10점)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4 이자배상비율 (10점, △)	[병원](손익계산서)의료이익 + (자금계산서)이자비용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5 기본재산규모 (10점, △)	[법인+학교+병원]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토지, 건물) + 병원재산 장부가액(토지, 건물) +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건물 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6 적립금 규모 (10점, △)	[법인+병원] 법인(적립금 총액 + 이월금 총액) + 병원(장기금융상품 + 투자유가증권)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7 차입금의존율 (10점, ▼)	[법인+병원]차입금 + 기본금(법인 기본금+ 병원 총자본)				
	평균 75% 미만 (10점)	평균 100% 미만 (7점)	평균 125% 미만 (4점)	평균 125% 이상 (1점)	
8 운영이익 (20점, △)	[병원](자금계산서) 최근 3년 의료수입 평균 - 최근 3년 의료비용 평균				
	상위 25% 이내 (20점)	상위 50% 이내 (15점)	상위 75% 이내 (10점)	상위 75% 초과 (5점)	
강령(30점)	① 3년간 30일 이상 연차 실적 학교(법인)	② 2년 이내 1차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③ 2년 이내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5 점	-10 점	-15 점		
가산점(15점)	①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선정교	② 별첨부담금 부담률 100%를 충족한 대학 및 전문대학	③ 기속사비 카드 결제, 현금 분할납부 방식 도입 기속사		
	5 점	5 점	5 점		
총 계	8개 항목 100점 만점				

# ▣ 중등이하(초·중·고)

## 용 자 심 사 표

( 중등이하(초·중·고등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 분		배 경 기 준			
상 관 능 력 평 가 지 표 ( 1 0 0 점 )	1 재산 및 사업 수입비율 (10점, △)	[법인]((재산수입+사업수입) + 총세입)×100			
		평균 125% 이상 (10점)	평균 100% 이상 (7점)	평균 75% 이상 (4점)	평균 75% 미만 (1점)
	2 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①+② 20점, △)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①)(10점)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②)(10점)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3 재산 및 사업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10점, ▼)	[법인]상환기간 중 연간 최대 원리금 상환금액 + (재산수입 + 사업수입)			
		평균 75% 미만 (10점)	평균 100% 미만 (7점)	평균 125% 미만 (4점)	평균 125% 이상 (1점)
	4 기본재산 대비 차입금 비율 (10점, ▼)	[법인+학교] 차입금 총액 + 기본재산 총액			
		$(1 - \text{Min}(\text{해당 중등법인의 기본재산 대비 차입금 비율}, 100\%)) \times 10\text{점}$			
5 운영차액규모 (10점, △)	[법인] 세입 - 세출				
	평균 125% 이상 (10점)	평균 125% 미만 (7점)	평균 100% 미만 (4점)	평균 75% 미만 (1점)	
6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10점,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text{Min}(\text{해당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100\%) \div 100\%) \times 10\text{점}$				
7 세입규모 (10점, △)	[법인]총세입 - 차입금				
	평균 125% 이상 (10점)	평균 100% 이상 (7점)	평균 75% 이상 (4점)	평균 75% 미만 (1점)	
8 이월금규모 (10점, △)	[법인] 세입 중 이월금 규모				
	평균 125% 이상 (10점)	평균 100% 이상 (7점)	평균 75% 이상 (4점)	평균 75% 미만 (1점)	
9 차입금의존율 (10점, ▼)	[법인+학교]차입금 + 총세입				
	평균 75% 미만 (10점)	평균 100% 미만 (7점)	평균 125% 미만 (4점)	평균 125% 이상 (1점)	
강령(30점)	① 3년간 30일 이상 연차 실적 학교 (법인)		② 2년 이내 1차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③ 2년 이내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5 점		-10 점	-15 점	
가산점(-점)					
총 계	9개 항목 100점 만점				

## ▣ 중등이하(유치원)

### 용자심사표

< 중등이하(유치원) >

유치원

구분		배점기준			
상 관 능 력 평 가 지 표 (100점)	1 정원내재원율 (10점, △)	[유치원] (총 원아수 + 인가정원)×100			
		{ Min(해당유치원의 정원내 재원율, 100%) ÷ 100% } × 10점			
	2 재산 및 사업 수입비율 (15점, △)	[법인]((재산수입+사업수입) + 총세입)×100			
		평균 125% 이상 (15점)	평균 100% 이상 (12점)	평균 75% 이상 (9점)	평균 75% 미만 (6점)
	3 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①+② 20점, △)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①)(10점)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법인]차입금 대비 수익용기본재산 수입액(②)(10점) 수익용 기본재산 수입액 ÷ 차입금			
		상위 25% 이내 (10점)	상위 50% 이내 (7점)	상위 75% 이내 (4점)	상위 75% 초과 (1점)
	4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15점,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보유액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 Min(해당법인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100%) ÷ 100% } × 15점			
5 세입규모 (15점, △)	[법인]총세입 - 차입금				
	평균 125% 이상 (15점)	평균 100% 이상 (12점)	평균 75% 이상 (9점)	평균 75% 미만 (6점)	
6 이월금규모 (15점, △)	[법인] 세입 중 이월금				
	평균 125% 이상 (15점)	평균 100% 이상 (12점)	평균 75% 이상 (9점)	평균 75% 미만 (6점)	
7 차입금의존율 (10점, ▽)	[법인+유치원]차입금 ÷ 총세입				
	30% 미만 (10점)	40% 미만 (7점)	50% 미만 (4점)	50% 이상 (1점)	
강령(30점)	① 3년간 30일 이상 연재 실적 학교(법인)	② 2년 이내 1차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③ 2년 이내 2차 위반 처분을 받은 학교(법인)		
	-5 점	-10 점	-15 점		
가산점(-점)					
총 계	7개 항목 100점 만점				